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01호 2010. 12. 30.(목)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8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2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36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168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84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1,824,000원” 을 “월1,917,000원”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5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용)**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감독 1명, 선수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서 또는 지원서를 검토하여 우수한 선수를 임용한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2. 일반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 ④ 감독 및 선수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3. 서약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건강진단서 1통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7. 명함판 사진 2매
- ⑤ 감독 및 선수의 계약 또는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감독은 3년 단위로, 선수는 1년 단위로 하며, 계약 또는 재계약 개시 전년도 12월중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에 따라 입단 약정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수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⑥ 임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신분보장)** ① 감독 및 선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 ② 감독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독 - 60세
  2. 선수 - 35세

**제4조(지휘·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문화관광체육과 소속하에 두고 감독 및 선수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감독은 선수 발굴,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 ③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복무)** ① 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 ③ 감독 및 선수는 연간 20일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 ⑤ 감독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 ⑥ 감독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
- ⑦ 감독 및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6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② 감독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징계)**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징계 요구 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② 징계의결 시 징계당사자에게는 진술권이 있고, 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8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2. 감독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3. 각종 경기에서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숙소에서 무단이탈 하였을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6.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하였을 경우
8. 감독이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경우
9.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경우
10.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다른 팀으로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9조(합숙소 설치 운영)**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관용차량운행)** 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다.

② 감독 및 선수의 월 보수는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분의 1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감독 및 선수의 연봉은 별표 2의 점수산정기준표에 따라 배점하며, 배점에 따른 등급별 연봉액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다.
2.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2조(출전비용 등)** ① 감독 및 선수가 전지훈련, 대회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고, 감독은 5급 공무원,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13조(급식비)** 선수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①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선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감독의 각종 대회 입상보상금은 팀 참가 시 해당부 선수 중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③ 입상보상금과 별도로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별표 7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며,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성과금지급 점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선수와 동일한 점수로 한다.

**제15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치비가 지급되어 임용된 선수는 별표 6과 같이 최소계약 유지기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 시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및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③ 계약기간이 종료 된 우수선수에 대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료보상)** ①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훈련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훈련복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② 감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퇴직급여)** 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②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 ③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특 별 휴 가 일 수

(단위 : 일)

구 분	휴가일수		
	종합우승	단체 1위	개인 1위
전국규모대회	3	2	1
전국체전	7	4	3
국제대회	10	7	5

[별표 2]

## 점수산정기준표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10	○ 선수단 근무경력(인천광역시 서구 입단) - 3년 이상 : 10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8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6점 - 1년 미만 : 4점	
경기력	70	○ 최근 1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활동 포함) - 국제대회 단체·개인전 : 1위 40점, 2위 30점, 3위 20점 - 전국체전 단체·개인전 : 1위 30점, 2위 20점, 3위 15점 - 전국규모 단체·개인전 : 1위 18점, 2위 15점, 3위 13점	
복무등	20	○ 복무상황 등 - 근무태도 : 10점 (탁월10,우수9,보통8,미흡7,부진6) - 기여도 : 5점 (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장래성 : 5점 (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감독 및 선수를 신규임용 할 경우에는 “복무등”의 배점을 10점으로 하고, 감독의 “경기력” 점수산정은 선수 전원의 평균점수로 한다.

[별표 3]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

직 책	등 급	연 봉 액		비 고
		점 수	보수액	
감 독	A	90점 이상	46,000,000	
	B	80점 이상 90점 미만	43,000,000	
	C	70점 이상 80점 미만	40,000,000	
	D	70점 미만	37,000,000	
선 수	A	90점 이상	40,000,000	
	B	80점 이상 90점 미만	36,000,000	
	C	70점 이상 80점 미만	32,000,000	
	D	60점 이상 70점 미만	28,000,000	
	E	60점 미만	24,000,000	

※ 감독 및 선수의 연봉 결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가능

[별표 4]

##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당 500,000원	팀당 500,000원	팀당 300,000원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본다.)

[별표 5]

##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단위 : 원)		
			1 위	2 위	3 위
	선수	단체	400,000	300,000	200,000
		개인	300,000	200,000	100,000

- 비고 1) 입상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단체·개인전 분야별로 전국체육(전국규모)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별표 6]

##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급수	유 치 비 기 준	최소계약 유지기간	지 급 액
1급	○ 1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5년	50,000,000원
2급	○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3년	30,000,000원
3급	○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활약하고 있는 사람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 이상 입상 경력자	2년	20,000,000원
4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 이상 입상 경력자 ○ 1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사람	2년	15,000,000원
5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2년	10,000,000원

- 비고) 1.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해당선수의 신규 입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대표선수의 자격 기간은 대한인라인롤러연맹의 국가대표선수 선발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7]

##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

(단위 : 점)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국제대회	100	80	60	※ 동일인이 같은 대회 의 단체분야와 개인분야 에서 각각 2개 이상 입 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 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전국체육대회	60	40	30	
전국규모대회	15	10	7	

- 비고) 1.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점수를 산정한다.)
2. 각종 입상자의 신기록 수립 시 추가로 가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대회신기록 3점, 한국신기록 5점, 아시아신기록 10점, 세계신기록 20점)

[별표 8]

### 훈련복 지급기준(연간)

구분	츄리닝	유니폼	땀복	잠바	파카	운동화	가방	T셔츠	기타
지급량 (1명당)	3	1	2	1	1	2	1	3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

## 추 천 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도력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 감독으로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지 원 서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현재 \_\_\_\_\_에 소속중인 졸업 예정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인 : (인)  
 보호자 : (인)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학 교 명 : (인)

학교장(총·학장) : (인)

위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을 승낙합니다.

입 단 단 체 :  
 대 표 자 : (인)

중앙경기단체확인란	
	교부자인

발급번호	
------	--

※대한 체육회 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3호서식)

## 추천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_\_\_\_\_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지 원 서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최종학력			
경 력			
주요경기 실 적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lt;앞 면&gt;

신분증
사진
No.
성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lt;뒷 면&gt;

소 속 : _____
직 명 : _____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 63×90mm)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글)	본관	성별	생년월일	본직				생활근거지	호주성명 및 관계			
				주소								
병 력 관 계	해당 없음	미 필			복 무							
		역종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영년월일	전역년월일	MOS
개 인 신 상 관 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력		색 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 교	취 미	특기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 당 사회단체	단 체 명		직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가 족 사 향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전 력	기 간		근무처		직위	기 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 면 사 항	임용년월일	직 위		확 인	퇴직년월일	직위		확 인		
연 봉	년 월 일	연봉	근무일수	확 인	년 월 일	연봉	근무일수	확 인		
임 용 전 경 기 실 적	기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기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기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기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별지 제7호서식)

## 퇴 직 금 여 청 구 서

성 명		생년월일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			퇴직당시직명	
첨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월평균 보수		○ 퇴직금 :                      원 산출액		○ 퇴직금 전환금 :                      원 납부액	

결 재	담당자	체육진흥 담당	문화관광 체육과장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퇴직일자	접수일자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에 입단을 지원하면서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단을 명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월 2회 이상 훈련에 불참하거나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훈련 및 대회출전에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직장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

주 소 :

직 명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

[소속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직 :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수명자	체육진흥담당	문화관광체육과장

(별지 제11호서식)

전지훈련(출전) 계획서

- 기 간 :
- 장 소 :
- 사 유 :
- 훈련 또는 출전자 :
- 현지숙소 및 연락처 :
- 세부일정별 계획

시간대별 훈련(출전)사항	일자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비 고

년 월 일

작성자 감독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감독,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의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합의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을은 갑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준연봉) 갑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을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금      원(세금포함)을 기준연봉으로 하여 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연봉의 조정)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이행 정도와 경기실적 결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갑과 을은 연봉지급방법에 대하여 양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방법 :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12회로 분할 지급한다.
2.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갑이 을에게 출전 요구한 경기종료 후 그 성적 여하에 따라 갑은 을에게 포상금(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규정과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을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갑에게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는 반면, 모든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을의 이익보호와 을의 권리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② 을은 규정과 계약서상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요구하는 경기 및 갑의 훈련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성

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의무이행 도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갑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을에게 수혜자격이 있다. 다만, 을과 갑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갑의 규정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불의 한계) 을은 제3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고 시 보수지급) 을(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부 활동이 불가능 하였을 때 31일째 되는 날부터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1년을 기준으로 연봉의 330분의 1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활동경비의 부담) 갑은 계약에 명시된 연봉 외에 계약기간 동안 을이 갑을 위하여 전지훈련, 대회참가로 출장하는 경우의 활동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한다.

제11조(용기구) 갑은 훈련 또는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상해보험)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실시한 훈련 및 경기로 인하여 상해(사망 포함)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상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갑이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건강진단) 을은 계약 체결 전 육체 및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결함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을의 계약위반)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계약을 파기한다.
2. 갑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을로부터 배상 받는다.

제15조(계약갱신) 선수계약 갱신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계약해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15조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 내용에 저촉될 때에는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제17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분쟁 발생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서 구 청 장 :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13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인라인롤러부) 훈련일지

담당자	체육진흥 담당	문화관광체육 과장	결 재

년 월 일

작성자 : (인)

참석 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자	불참자내역				
				계	교육	연가	병가	기타
훈련 내용	시 간	훈련내용		장 소				
특이 사항								



(별지 제15호서식)

징계 의결 요구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 글		②소 속		③직 위	
		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재직기간	년 월
	⑥주소						
⑦ 징계 사유	“별첨 참조”						
⑧징 계의 결요 구권 자의 의견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서구청장</p> <p>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p>							

(별지 제16호서식)

# 이 적 동 의 서

이적 선수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종 목	직 위	근무부서
	부 터	까 지			
			인라인롤러		
	근무년한				
	퇴직사유				
	용 도				

위와 같이 우리구에 근무한 선수가 \_\_\_\_\_ 으로 이적함을  
동의합니다.

20 . . .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5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사무전결처리사항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각실·과 공 통</b>	1. 복무						
	가.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1) 관외출장						
	(가) 부구청장				기안	○	
	(나) 국장				○		
	(다) 5급			기안	○		
	(라) 6급		기안	○			
	(마) 7급이하	기안		○			
	(2) 관내출장						
	(가) 부구청장				기안	○	
	(나) 국장				○		
	(다) 실장			기안	○		
	(라) 과장			○			
	(마) 6급		기안	○			
	(바) 7급이하	기안		○			
	나. 연가,휴가,조퇴,외출의 허가 및 특근명령						
	(1) 연가 및 휴가(병가, 공가)						
	(가) 부구청장				기안	○	
	(나) 국장				○		
	(다) 5급			기안	○		
(라) 6급		기안	○				
(마) 7급이하	기안		○				
2. 회의소집							
가.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한 중요회의		기안			○		
나. 실·과·소·동장 회의	기안				○		
다. 기타 직원회의	기안		○				
3.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고객만족도 측정	기안			○			
4. 상훈							
가. 공무원 표창							
(1) 표창계획 수립	기안				○		
(2) 공적심의 요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각실·과 공 통</b>	(3) 공적심사	기안				○	
	(4) 표창대상자 선발통보	기안	○				
	(5) 표창상신(추천)	기안		○			
	나. 민간인 표창	기안					○
	5. 기획						
	가.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주요업무 및 주요시책에 따른 자료제출	기안				○	
	다. 경미한 자료의 처리	기안		○			
	라.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1) 중요한 통계	기안				○	
	(2) 경미한 통계	기안		○			
	6.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가. 위원장이 구청장 또는 외부인사	기안					○
	나. 위원장이 부구청장	기안				○	
	다. 위원장이 국장	기안			○		
	라. 위원장이 실·과장	기안		○			
	7. 예산						
	가. 예산편성 요구서(자료) 제출	기안			○		
	나. 예산배정 요구	기안	○				
	다. 예산전용 요구	기안			○		
라. 예산 재배정							
(1) 시설비	기안			○			
(2) 기 타	기안		○				
마. 국고보조금(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청		기안			○		
바. 사회단체보조금 및 일반보조금 교부 결정		기안			○		
8.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정비							
가. 조례·규칙·훈령·예규 제·개정 및 폐지 방침결정							
(1) 중요사항(정책적 사항 등)	기안					○	
(2) 경미한 사항(자구수정 등)	기안				○		
나. 조례·규칙·훈령·예규 법제심사 의뢰	기안			○			
다.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기안			○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뢰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각실·과 공 통</b>	마. 조례·규칙·훈령·예규안 확정	기안					○
	9. 고시·공고 및 법령질의						
	가. 고시·공고문 결정	기안			○		
	나.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해석과 질의응답	기안			○		
	10. 공사						
	가.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나. 중요공사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기안		○			
	라. 공사감독원 지정	기안		○			
	마. 공사감독일지 및 인부점검	기안	○				
	바. 계약심사 의뢰	기안		○			
	사. 설계범위내 인부고용	기안		○			
	아.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원의 지정 및 교체	기안		○			
	자. 공사하자 보수명령	기안		○			
	차. 공사기간 연기명령	기안		○			
	카. 도급공사의 중지 및 해지명령	기안		○			
	타. 관급자재 수불	기안	○				
	11. 민원처리						
	가. 청원·진정·건의서 접수,처리 및 취하						
	(1) 4人以下	기안		○			
(2) 5인 ~ 19인	기안			○			
(3) 20인 ~ 29인		기안			○		
(4) 30인이상		기안				○	
나. 일반민원서류(청원·진정·건의서 제외) 접수, 처리 및 취하	기안		○				
다. 청원·진정·건의서 불가 및 반려처리							
(1) 4人以下	기안			○			
(2) 5인이상		기안				○	
라. 일반민원서류(청원·진정·건의서제외) 불가 및 반려처리	기안			○			
마. 인터넷 민원	기안		○				
바. 정보공개 처리	기안		○				
12. 기록물관리							
가. 기록물등록 및 배부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각실·과 공 통</b>	나. 기록물관 13. 기타 가. 소속공무원의 배치 나. 소속공무원의 담당 사무분장 다. 관계자 소환 및 사유 제출 요구 라. 인부사역 마. 수리치 못할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바. 물품관리 및 보관 사. 각종 간행물 배부 아. 차량 운행 및 관리 자. 각종 일지 및 일보 처리 차. 회계관직 공무원 변경	기안		○			
			기안 기안	○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1. 자체평가업무 추진						
	가. 평가지침 및 계획수립, 최종 결과보고	기안				○	
	나. 단계별 평가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자체평가위원 위·해촉	기안				○	
	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기안		○			
	2. 구정방침 결정						
	가. 구정구호 선정 및 변경		기안			○	
	나. 구정방침 선정 및 변경		기안			○	
	다. 구정역점시책 선정 및 변경	기안				○	
	3. 구정특수시책 개발 및 추진						
	가. 연도별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반기별 심사분석 및 평가보고	기안				○	
	다. 연도별 추진실적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4. 구정업무 연구 연찬						
	가. 타시도 비교시찰 계획수립	기안				○	
	나. 구정시책 접목시책 발굴 및 시행	기안				○	
	5.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총괄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		기안			○	
	6. 국제교류사업 추진						
	가. 국제교류사업 종합추진계획		기안			○	
	나. 국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체결	기안				○	
	다. 해외사절단과견등 계획수립	기안				○	
	라. 외국 또는 외국기관과의 섭외	기안				○	
	마. 국제자매도시 교류협의회 구성	기안				○	
7. 주요업무 시행계획							
가. 계획수립 및 보고		기안			○		
나. 수정운영계획 및 보고	기안				○		
다. 전시운영계획 및 보고	기안				○		
8. 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총선거이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		기안			○		
나. 임시회 소집 요구	기안				○		
다. 의안의 발의	기안				○		
라. 조례안등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재의요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마. 선결처분	기안					○
	바. 의회에서 이송된 청원중 다수인 관련사항	기안					○
	사. 구정 주요정책사항의 질의답변			기안			○
	아. 의회 부의안건 공고	기안		○			
	자. 청원 처리사항 보고		기안			○	
	차. 선결처분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	기안		○			
	카. 선결처분 공고	기안		○			
	타. 의회 요구자료 제출	기안		○			
	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안		○			
	하. 의회질의 답변	기안		○			
	거.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너. 의회운영 동향보고	기안		○			
	더.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기안			○	
	9. 기구 및 직제						
	가. 기구 및 직제 조정	기안					○
	나. 행정기구 조정자료 조사	기안		○			
	10. 정원관리						
	가. 정원조정		기안				○
	나. 기관간 부서간 정원조정	기안					○
	다. 정원관리 실태조사	기안		○			
	11. 조직 및 인력진단						
	가. 종합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기안		○			
	12. 사무위임·위탁사무 결정 및 승인		기안			○	
	13. 사무전결처리						
	가. 단위사무 및 전결권 조정	기안				○	
	나. 자료조사	기안		○			
	14. 사무분장						
가.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기안				○		
나. 자료조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15.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관리	기안				○	
	16. 정책실명제 운영						
	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수립	기안				○	
	나. 기타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기안		○			
	17. 대통령,국무총리, 장관, 시장 지시사항						
	가. 지시사항 시달		기안	○			
	나.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다. 최종 실적보고		기안	○			
	18. 구청장 지시사항						
	가. 지시사항 시달	기안		○			
	나.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기안					○
	19. 주민설문조사 및 분석						
	가. 주민설문조사 세부추진계획	기안				○	
	나. 주민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안		○			
	20. 출장통제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출장통제	기안					
	21. 명예외교관 운영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명예외교관 운영	기안		○			
	다. 운영결과 보고	기안					○
	22. 행정자료실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관리	기안		○			
23. 충무계획 수립	기안					○	
24. 예산편성							
가.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안				○	
나. 예산편성자료 제출요구 및 심사	기안		○				
다. 예산(안)편성 및 승인요구		기안				○	
라. 예산확정 고시 및 결과보고	기안					○	
마. 절감예산 및 실행예산 편성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바. 추경예산 성립전 경비사용 결정	기안					○
	사. 회계간 전출입금 결정		기안			○	
	아.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결정		기안				○
	25. 예산배정						
	가. 세출예산 연간배정계획 수립	기안		○			
	나. 분기별 예산배정	기안	○				
	다. 월별(수시) 예산배정	기안	○				
	라. 예산 감액배정	기안	○				
	26. 지방재정운영						
	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자료 제출 요구	기안		○			
	다. 투자심사분석 및 재정계획 의회보고	기안					○
	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계획 수립		기안				○
	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신청	기안					○
	바. 조기집행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사. 지방재정공시	기안					○
	아. 용역관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자. 용역관리심사위원회 개최		기안				○
	차.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수립	기안					○
	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기안				○
	타. 재정분석 보고	기안				○	
	파. 재정운영 일반보고	기안	○				
	하. 지방채 발행, 기채, 채무부담 행위결 정, 조상충용결정 및 승인요구		기안				○
	거. 지방채무 관리	기안		○			
	너.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안				○
	27. 지방교부금 운영						
	가. 특별교부세 신청	기안					○
	나. 특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요구 및 일반업무	기안		○			
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제출	기안		○				
라.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요구	기안		○				
마. 재원조정교부금(일반 및 특별교부금)신청		기안				○	
바.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요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28. 보조금 관리						
	가. 국,시비보조금 신청	기안				○	
	나. 국,시비보조금 산정자료 제출요구	기안		○			
	29. 예산의 신속적 운영						
	가. 예비비 지출결정		기안			○	
	나. 예비비 승인요구	기안					○
	다. 예산 전용 결정	기안		○			
	라. 예산 이용 결정	기안		○			
	마. 예산 이체 결정	기안		○			
	바. 이월사업 결정자료 요구	기안		○			
	사. 명시이월사업 승인 요구	기안		○			
	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결정		기안			○	
	30. 구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1. 법제자료의 조사·수집·연구		기안		○		
	32.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정비						
	가. 조례·규칙·훈령·예규 정비안 심사	기안		○			
	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다. 조례·규칙안 사전보고	기안		○			
	라. 조례·규칙 공포	기안					○
	마. 훈령·예규 발령	기안					○
	33.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편찬 간행	기안		○			
	34. 중요문서 심사·통제		기안○				
	35. 행정절차제도 운영	기안		○			
	36.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가. 제소·피소의 결정 및 보고						
	(1) 분안사건	기안					○
	(2) 신청사건	기안		○			
	나. 소송위임		기안	○			
	다.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라. 자료수집	기안		○			
마.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기안		○				
바. 소송종결 및 상고여부 결정	기안					○	
사.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기안				○	
아. 소송비용결정 신청 및 회수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37.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청구 접수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행정심판청구 진달	기안		○			
	다. 답변서 제출	기안		○			
	라. 협의의견 조회	기안		○			
	38. 통계자료의 종합계획 수립 및 분석		기안				○
	39. 통계자료의 심사 및 통제		기안		○		
	40.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가. 통계자료의 수집	기안			○		
	나. 통계간행물 발간	기안			○		
	41. 통계연보 발간						
	가. 자료취합 및 심의	기안			○		
	나. 연보 발간	기안			○		
	4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조사원 및 지도원 임명	기안			○		
	다. 통계자료의 수집	기안	○				
	라. 조사결과 보고	기안			○		
	43. 광공업통계조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조사원 및 지도원 임명	기안			○		
	다. 통계자료의 수집	기안	○				
	라. 조사결과 보고	기안			○		
	44. 산업총조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조사원 및 지도원 임명	기안			○			
다. 통계자료의 수집	기안	○					
라. 조사결과 보고	기안			○			
45. 인구·주택총조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조사원 및 지도원 임명	기안			○			
다. 통계자료의 수집	기안	○					
라. 조사결과 보고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46. 고용구조 조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조사원 및 지도원 임명	기안		○			
	다. 통계자료의 수집	기안	○				
	라. 조사결과 보고	기안		○			
	47. 행정지도 발간 및 배포						
	가.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기안		○			
	나. 제작 및 배포	기안		○			
	48. 규제개혁업무 추진						
	가.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기안				○	
	49. 감사기본계획 수립						
	가. 종합감사	기안					○
	나. 부분, 회계, 기술감사	기안				○	
	50.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가. 감사계획 시달	기안		○			
	나. 감사일정 변경	기안		○			
	다.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지시	기안					○
	라. 감사처분사항 이행확인	기안		○			
	마. 처분지시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결정	기안				○	
	51. 상급기관 감사 관련사항						
	가. 감사계획 시달	기안				○	
	나. 수감자료 작성	기안		○			
	다. 수감결과 처분요구	기안		○			
라. 수감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기안				○		
마. 수감결과 보고	기안				○		
바. 감사동향 보고	기안				○		
52. 회계에 대한 실지검사							
가. 검사계획 시달	기안				○		
나. 검사결과 보고	기안				○		
다. 검사결과 통보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53.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기안				○
	54. 공무원 경고 및 훈계에 관한 사항						
	가. 기관경고		기안			○	
	나. 공무원 훈계	기안				○	
	55.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기안			○	
	56. 사법기관통보 범죄공무원 처리						
	가. 주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다. 이첩 및 참고사항	기안		○			
	57. 대형공사 일상감사						
	가. 결과보고 및 처분지시	기안		○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기안		○			
	58. 청원 및 건의민원처리						
	가. 집단행동화 할 소지가 있는 민원		기안				○
	나. 민생과 관련있는 민원	기안		○			
	다. 대통령 비서실, 정부합동민원실	기안				○	
	라. 기관이첩 청원, 진정 및 건의민원	기안		○			
	마. 다수인관련 민원통계 및 관리	기안	○				
	59. 사무인계, 인수사항 확인결과 시정조치						
	가. 과장급이상	기안				○	
나. 팀장	기안		○				
60. 사정업무 추진							
가. 사정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청렴도 측정	기안				○		
다. 직무감찰	기안		○				
61. 구정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나. 처리지시 및 보고	기안		○				
다. 처리결과 확인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62.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가.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계획 수립 나. 점검결과 보고 및 시달	기안				○	
	63.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가. 재산등록 심사결과 보고 나. 재산등록신고서 접수	기안		○			○
	64. 특명사항 처리 가. 구청장지시사항 나. 부구청장이하 지시사항	기안	기안			○	○
	65. 망실·훼손사고의 조사처리		기안			○	
	66. 소청 및 재심청구		기안				○
	67. 감사통계 작성 가. 감사통계 작성 보고 나. 감사통계 자료 통보	기안		○			
	68. 21C 서구비전기획단 추진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구정접목 시책추진 다. 기획단 운영 및 관리	기안				○	
	69. 미래발전전략 추진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연차별 사업추진 및 연동계획수립 다. 추진사항보고회	기안				○	
	70. 서구의제21 추진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서구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및 관리	기안		○			○
	71. 구정시책 발굴 및 추진 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나. 사업추진 및 관리	기안		○			○
	72. 분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계획수립	기안					○
	73. 행정통신 운영 및 시설관리 가. 통신시설·장비 관리 나. 통신시설·장비 신·증설 다. 행정통신시설공사 감독, 검사	기안		○			
					○		
					○		
					○		
					○		
					○		
					○		
					○		
					○		
					○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74. 팩시밀리시설 운영 관리						
	가. 팩스 동보장치 운영관리	기안	○				
	나. 팩시밀리 운영관리	기안	○				
	75. 종합정보통신망 운영						
	가. 초고속망 이용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기안			○	
	76. 행정방송시설 운영						
	가. 일반방송 시설·장비 신·증설 계획수립	기안		○			
	나. 방송시설공사 감독, 검사	기안		○			
	다. 영상정보 방송망 신설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라. 행정방송 장비관리	기안	○				
	마. 행사시 장비 및 운영요원 지원	기안	○				
	77. 교환실 운영	기안	○				
	78.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의 통합관리						
	가. 일반전화 청약해지	기안		○			
	나. 전용회선 청약해지	기안		○			
	다. 이동전화기 통합관리	기안		○			
	라. 공공요금의 통합관리	기안		○			
	79. 통신기술 교육훈련	기안		○			
	80. 비상통신망 운영관리	기안		○			
	81. 통신 보안업무						
	가. 통신보안활동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정통신 보안심사분석		기안	○			
	다. 보안장비 운용	기안		○			
	라. 통신보안 지도점검	기안		○			
	마. 통신시설 지도점검	기안		○			
	바. 통신보안교육	기안		○			
	82. 주택건설사업(구내통신)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기안		○			
83.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및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							
가.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접수 및 필증교부	기안○						
나. 건축물 착공전 정보통신설계도 검토 및 결과통보서 교부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다. 재검사 및 보완통보	기안		○			
	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기안				○	
	마. 교육 및 업무계획수립	기안		○			
	바. 검사기록관리대장	기안		○			
	사. 현장방문 검사 시행	기안	○				
	아. 추진실적 보고(분기)	기안		○			
	자.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필증교부 현황보고	기안		○			
	84. 본청 및 산하기관의 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						
	가. 근거리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기안			○	
	나. 주전산기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85.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및 조정						
	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기안			○	
	86. 정보화제도 수립 및 시행		기안			○	
	87.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가. 정보시스템 개발 및 도입계획수립		기안				○
	나. 주전산기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기안		○		
	88. 네트워크 관리						
	가. 근거리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기안			○	
	나.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		기안		○		
	다. 지방행정정보망 유지관리		기안		○		
	89.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가. 행정전산장비 도입		기안		○		
	나.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기안		○		
	90. 정보화교육훈련						
	가. 공무원 정보화교육		기안		○		
	91. 행정정보화업무처리 및 유지관리						
가. 세외수입프로그램 운영관리		기안		○			
나.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다. 예산회계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라.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마. 복식부기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바. 시군구행정 고도화사업추진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92. 전산보안 업무						
	가. 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출입자 통제 및 보안장비 운영	기안		○			
	나. 자료보안 및 파괴	기안		○			
	다. 전산자료 관리 통제	기안		○			
	라. 전산보안 교육	기안		○			
	마. 전산보안 지도점검	기안		○			
	바. 전산보안활동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사.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	기안		○			
	아.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설치	기안				○	
	93. 인터넷 업무처리 유지관리						
	가. 웹사이트 구축 및 보강계획수립		기안				○
	나. 인터넷 웹서버 관리	기안		○			
	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안		○			
	라.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관리	기안		○			
	마. E-Mail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기안		○			
	바. 방화벽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기안		○			
	94.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가. 전자문서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자문서 운영 및 관리	기안		○			
	95. 응용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기안		○			
	96. 소프트웨어 협의조정	기안		○			
	97. 사랑의 PC무상수리 지원계획수립	기안					○
	98. 정보기술아키텍처 사업추진						
	가.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기안				○
	99. 지방분권업무 추진						
	가. 자체계획수립	기안					○
	나. 자치경찰제 관련운영계획 수립	기안					○
	100. 지방이양대상 관련사무 추진						
가. 지방이양관련 자체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조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101. 공공기관 서구 유치 가. 자체계획수립		기안				○
	나. 공공기관 서구 유치 추진 운영	기안		○			
	102. 민원·제도개선 가. 자체계획수립		기안			○	
	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기안		○			
	다. 민원·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기안				○	
	103.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협정 체결		기안				○
	다. 자매결연 추진 교류	기안				○	
	104. 자체 교육기관 설립 운영 가. 교육기관 설립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나. 교육기관 설립 추진	기안		○			
	다. 교육기관 운영	기안		○			
	105. 홍보행정 가.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홍보물 매개조사	기안		○			
	다. 언론여론 및 홍보자료 수집	기안		○			
106. 보도자료 제공 가. 특집·기획 보도자료		기안				○	
나. 일반 보도자료	기안		○				
다. 구정에 관한 보도 및 주간보도분석	기안		○				
107. 기자실 운영	기안		○				
108. 전시구정홍보 선전물 제작 운영		기안		○			
109. 구정소식 발간	기안			○			
110. 구정화보 편집발간		기안				○	
111. 항공사진촬영	기안		○				
112. 신문구독계획	기안	○					
113. 구정홍보게시판 전시 및 관리	기안		○				
114. 구정발전상 사진전 개최계획수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기 획 홍 보 실</b>	115. 구정홍보 관리						
	가. 신문보도사항 보고	기안		○			
	나. 사진촬영 관리	기안		○			
	116. 국·시정 홍보자료 관리	기안		○			
	117. 지방공기업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공기업등의 설치	기안					○
	나. 이사장 및 임원 임·면 사항	기안					○
	다. 정관개정 및 중요규정에 관한 승인사항	기안					○
	라. 공단의 업무 지휘·감독	기안				○	
	마. 공사공단의 예산 결산 승인	기안					○
	바. 공단예산 시정명령	기안		○			
	사. 기타 자료 요구 및 통보	기안		○			
	아. 공인회계사 지정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1. 국경일 및 각종 기념행사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가로기 관리 및 계양 시달	기안		○			
	2. 보안업무 가. 보안계획수립		기안		○		
	나. 보안업무 감사	기안		○			
	다. 보안교육	기안		○			
	라.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통계 보고	기안		○			
	마. 보안사고 발생보고		기안			○	
	바. 월중보안진단결과 보고	기안		○			
	3. 총무계획 수립 가. 총무계획 수립		기안				○
	나. 총무계획 발간통제	기안		○			
	4. 구민의 날 행사 개최 가. 구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구민의 날 행사 세부추진계획	기안		○			
	다. 구민의 날 부대 행사		기안	○			
	라. 구민의 날 행사 결과 보고	기안		○			
	5. 구민상 시상계획 가. 구민상 시상계획 수립		기안				○
	나. 구민상 현지확인계획 수립	기안		○			
	다. 구민상 물품 구입	기안		○			
	라. 구민상 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		
마. 구민상 홍보 의뢰	기안		○				
6. 시무식, 종무식 가. 시무식, 종무식 계획 수립		기안		○			
나. 송년사 작성	기안					○	
7. 직원월례조회 가. 직원월례조회 개최 통보	기안		○				
8. 우수졸업생 표창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가. 우수졸업생 표창계획 수립		기안		○		
	나. 우수졸업생 표창계획서 통보	기안		○			
	다. 우수졸업생 표창 수상품 구입	기안		○			
	9. 일반서무						
	가. 청사경비	기안		○			
	나. 청내 사무실 배치 및 관리		기안			○	
	다. 직장 체육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소속공무원 후생에 관한 사항		기안			○	
	10. 비상연락체계 유지						
	가. 비상연락망 훈련 실시		기안		○		
	나. 비상연락망 정비	기안	○				
	다. 휴일 간부공무원 소재 파악	기안	○				
	라. 비상소집 필수훈련 지정	기안		○			
	11. 취미동호인회 운영	기안		○			
	12. 직장금고 운영						
	가. 신용대출	기안		○			
	나. 매 점	기안		○			
	다. 수입증지	기안		○			
	13. 직원식당 운영						
	가. 직원식당 계약	기안				○	
	나. 직원식당 운영 지도 감독	기안		○			
	14. 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기안		○			
	15. 직장민방위대 운영						
	가. 직장민방위대 편성	기안		○			
	나. 비상소집훈련 실시		기안			○	
	16. 직장예비군 운영						
	가. 예비군 교육훈련	기안		○			
	나. 자체방호계획		기안		○		
	17.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가. 공무원 요양 승인신청	기안		○			
	나. 연금급 청구	기안		○			
	다. 공제회 운영관리	기안		○			
라. 의료보험 및 건강진단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18. 복 무						
	가. 복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실시	기안			○		
	나. 복무에 관한 각종 대장 사열	기안	○		○		
	다. 당직근무 지침	기안		○			
	라. 실·과장이하 당직명령	기안		○			
	19. 공무국외여행						
	가. 해외여행 심사	기안				○	
	나. 해외여행 허가 통보	기안				○	
	다. 해외여행 귀국 보고	기안				○	
	20. 직장협의회 지원업무	기안		○			
	21. 공무원 임용						
	가. 일반직 공무원 임용						
	(1) 6급이상 공무원	기안				○	
	(2) 7급이하 공무원	기안				○	
	나.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임용	기안				○	
	다.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임용	기안				○	
	라.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해제	기안				○	
	마.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해제	기안		○			
	22. 청원경찰 임용	기안		○			
	23. 호봉승급	기안			○		
	24.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가. 5급이상 명부작성 및 조정	기안				○	
	나. 6급이하 및 기능직 명부작성·조정	기안				○	
	25. 전출, 전입 동의						
	가. 6급이상공무원 전출,전입 동의	기안				○	
	나. 7급이하공무원 전출,전입 동의	기안				○	
	26. 구, 사업소, 동간 전보 및 조정						
	가.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기안				○	
나.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기안				○		
27. 전보 사전심의 요구	기안				○		
28. 공무원 임용 시험요구							
가. 특채(특임)시험 요구	기안				○		
나. 전직시험 요구							
(1) 6급이상 공무원	기안				○		
(2) 7급이하 공무원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29. 공무원 특별임용 및 전직시험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험 실시	기안			○		
	다. 합격자 결정		기안			○	
	라. 시험위원 위·해촉	기안			○		
	마.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0. 기타 인사사무						
	가. 인사제도의 기획		기안			○	
	나. 각종 인사통계	기안		○			
	다. 전력조회 및 회보	기안	○				
	라. 인사기록 관리	기안	○				
	마. 발령대장 확인	기안	○				
	바. 근무성적 이관	기안	○				
	사.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기안	○				
	아. 공무원증 발급	기안	○				
	자. 임용후보자 총원 요구	기안		○			
	차. 근무성적 평정						
	(1) 5급이상 공무원		기안			○	
	(2) 6급이하 공무원	기안			○		
	카. 경력평정						
	(1) 5급이상 공무원	기안				○	
	(2) 6급이하 공무원	기안			○		
	31. 공무원 표창						
	가. 연간표창계획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기안		○			
	나. 모범공무원 표창수상자 수당 지급	기안		○			
	32. 명예퇴직대상자 심의요구						
	가. 일반직 6급이상 공무원		기안			○	
	나. 일반직 7급이하 공무원	기안			○		
33. 근속 및 우대승진자 심의요구	기안			○			
34. 직위해제	기안				○		
35. 징계처분 및 의결							
가.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기안			○			
나. 지방계약직 공무원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총 무 과	다.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기안				○	
	라. 청원경찰	기안			○		
	36. 공무원 피교육자 차출						
	가. 5급이상공무원 교육수요조사	기안			○		
	나. 6급이하공무원 교육수요조사	기안		○			
	다. 공무원 교육명령	기안			○		
	37. 공무원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계획 수립	기안				○	
	나. 직장교육	기안		○			
	다. 외래강사 초빙	기안			○		
	라. 소양고사 실시	기안			○		
	38.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39. 통·반구역 조정	기안					○
	40. 행정운영동 조정	기안					○
	41. 법정동간 경계조정	기안					○
	42. 지방행정동향 보고						
	가. 일일동향보고	기안	○				
	나. 지휘보고	기안					○
	43. 여론행정						
	가. 여론모니터 위·해촉	기안		○			
	나. 여론모니터 운영	기안		○			
	다. 여론과약	기안	○				
	44. 행정관리통제 운영						
	가. 각종 회의 및 교육 통제	기안	○				
	나. 직원통제	기안	○				
	45. 구 사업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결과 보고	기안		○			
	46. 7급이하 및 기능직의 시보해제	기안			○		
47. 적십자회비모금							
가. 적십자회비모금계획 수립	기안		○				
나. 적십자회비모금활동 지원	기안		○				
48. 부업대학생 관리	기안		○				
49. 인원 보안							
가. 신규임용후보자 신원조회 의뢰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기안			○		
	다.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기안		○			
	50.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 수립	기안				○	
	5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 수립	기안	기안			○	
	52. 각종시책 추진업무 기본계획 수립	기안	기안			○	
	53.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						
	가. 평가계획수립 및 우수부서 선정	기안				○	
	54. 신지식인 접수 및 선정 제출	기안		○			
	55. 민간단체 업무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가. 민간단체 활동 지원	기안		○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기안			○		
	다. 보조금 정산	기안		○			
	56.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						
	가. 협의회 활동 지원	기안		○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기안			○		
	다. 보조금 정산	기안		○			
	57. 반상회 운영						
	가. 반상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반상회 개최	기안		○			
	다. 반상회 개최결과 및 건의사항 통보	기안		○			
	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기안		○			
	58. 통·반장 조직 운영						
가. 통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	기안		○				
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계획	기안		○				
다. 모범통·반장 표창	기안		○				
라.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계획 수립	기안	기안			○		
59. 구정설명회(구청장)	기안	기안			○		
60. 시정설명회(시장)	기안	기안			○		
61.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	기안		○				
62. 구청장협의회 운영	기안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63. 부구청장협의회 운영	기안				○	
	64. 자율방범대 운영						
	가. 자율방범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기안		○			
	65. 지역별 현장순찰제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결과보고	기안		○			
	66. 확대간부회의 운영	기안				○	
	67.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체제안심사 의뢰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기타 제안제도 일반업무	기안		○			
	68. 주민등록업무 분야						
	가. 주민등록업무 지침 및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 수립	기안			○		
	다. 주민등록(전산)운영 종합평가	기안			○		
	라. 주민등록증 인수·인계	기안	○				
	마. 증명발급 상황보고	기안	○				
	바. 주민등록증 회수 및 훼손증 파기	기안		○			
	사. 주민등록번호 추가 부여	기안		○			
	아. 주민등록 보안	기안		○			
	자. 주민등록 일반업무	기안		○			
	차.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기안○					
	69. 행정사 업무 분야						
	가. 행정사 일반업무 처리	기안		○			
	나. 행정사업(변경/폐업) 신고	기안		○			
	70. 외국인 업무						
	가. 외국인등록표 관리(등록표 이송요구, 송부 및 체류지 변경 통보)	기안○					
	나. 체류지 변경신고서 접수·처리	기안○					
	다. 외국인 인감에 관한 사항	기안○					
	라.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발급	기안○					
	71. 선거분야						
	가. 선거사무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나.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보고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다.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보고	기안				○	
	라. 투표구 확정		기안			○	
	마. 선거관련 업무지도 및 지원	기안			○		
	바. 선거사무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	기안			○		
	사. 선거관련 홍보 및 주민 계도	기안		○			
	아. 인구수 등의 통보	기안		○			
	자. 투·개표사무원 선정 통보		기안	○			
	차. 선거인명부 작성 공무원의 임면 통보	기안		○			
	카.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 명부) 등본송부	기안		○			
	타.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기안		○			
	파.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통지	기안		○			
	하.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및 신고서 송부	기안		○			
	거. 선거인명부(부재자)날인 인장의 인영신고	기안		○			
	너. 선거인명부 열람(공람)장소,기간 공고	기안		○			
	더. 선거사무 지도	기안		○			
	러. 선거인명부(부재자) 사본 신청접수 교부	기안		○			
	며. 후보자 연설회 개최 지원	기안		○			
	버. 투·개표장 설치 지원	기안			○		
	서. 부재자 신고접수	기안		○			
	어. 부재자신고 오기등 발견사실 통보	기안		○			
	저.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신고접수	기안		○			
	처.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교체접수	기안		○			
	커.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기안		○			
	터. 선거인명부 오기등 발견사실 통보	기안		○			
	피. 선거권이 없는 자 통보	기안		○			
	허. 기타 선거관련 업무지도 및 협조지원	기안		○			
	72. 인감업무 관리						
	가. 인감업무 지침 및 계획 수립	기안		○			
	나. 기타 인감관련 일반업무	기안		○			
	73. 주민등록 전산						
	가. 주민등록 전산자료 관리 및 자료제공에 따른 이용승인	기안		○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다.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업무권한 부여 관리	기안		○			
	74. 새마을운동 종합 추진						
	가. 새마을구지회 및 문고 운영보조금지원	기안		○			
	나. 보조금 정산	기안		○			
	다. 새마을지회 및 문고 지도육성	기안		○			
	75. 새마을금고 관리						
	가. 설립인가 및 취소	기안			○		
	나. 정관변경 인가	기안			○		
	다. 합병 및 분할의 승인	기안			○		
	라. 금고지도 검사 및 처분지시	기안			○		
	76.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가. 새마을지도자 상훈관계		기안		○		
	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기안			○		
	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시책 보고	기안			○		
	77. 국민운동 시책 추진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교육실시 및 성과 분석	기안			○		
	다. 사업지도 및 실적평가	기안		○			
	78. 무기계약직 노조에 관한 사무						
	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		기안			○	
	나. 무기계약직 노조 지원	기안		○			
	다. 무기계약직 노조 관리	기안		○			
	79. 고충상담에 관한 사무						
가. 다수인관련 중재 및 조정		기안		○			
나. 민원발생지역 현장점검 및 관리	기안	○					
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관리	기안	○					
라.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총 무 과</b>	마. 민원발생요인 평가분석 및 민원처리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보고	기안					○
	바.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관리	기안		○			
	8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기안					○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기안					
	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기안				○	
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인 재 육성</b>	1. 학교교육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가. 교육경비보조금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기안				○	
	다. 교육경비보조금교부계획수립	기안				○	
	라. 교육경비보조금정산보고	기안			○		
	마.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	기안			○		
	바. 취학아동 지원업무	기안		○			
	사. 학교 도서지원 관련업무	기안				○	
	2. 외국어 교육특구 관련업무						
	가. 외국어 교육특구 추진(변경) 계획 수립	기안				○	
	나.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성과 보고	기안				○	
	3. 외국어 활성화 관련 업무						
	가. 영어광장 운영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나. 영어광장 운영 결과 보고	기안		○			
	다.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개최 계획수립	기안			○		
	라.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개최 결과 보고	기안		○			
	4. 평생학습 관련 업무						
	가. 평생학습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나.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기안				○	
	다. 평생학습 센터 설치 운영 계획	기안				○	
	5.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가.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종합계획수립	기안				○	
	나.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결과보고	기안			○		
	6.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						
	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교부 계획수립	기안				○	
	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보조금 정산 보고	기안			○		
	라.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도 점검	기안			○		
7.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업무							
가. 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기안				○		
나.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인 재 육 성과</b>	다.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신청	기안			○		
	라.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정산 보고	기안			○		
	8. 정보화 교육훈련						
	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기안		○			
	9. 서구 아카데미						
	가. 서구 아카데미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나. 서구 아카데미 개최 결과 보고	기안		○			
	10. 외국인 지역 적응 교육 지원						
	가. 외국인 지역 적응 교육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나. 외국인 지역 적응 교육 지원 결과 보고	기안			○		
	11. 온라인영어학습사이트 "ISEL"관련업무						
	가. ISEL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ISEL 운영결과 보고	기안			○		
	12. 청소년육성 일반						
	가. 청소년보호·육성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문화존 운영	기안			○		
	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기안		○			
	라.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기안		○			
	1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기안			○
	나. 기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기안				○	
	다. 이용료 승인신청	기안		○			
	라. 위탁단체 심의 및 선정	기안				○	
	마. 위탁관리자 변경	기안		○			
	바.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기안		○			
	사. 운영지원 및 보고	기안		○			
	14. 청소년공부방 설치 운영						
	가. 설치 및 운영	기안			○		
	나. 위탁운영 협약 체결	기안		○			
	다. 위탁관리자 변경	기안		○			
라. 지도점검 및 조치	기안		○				
마. 운영지원 및 보고	기안		○				
15.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가. 대상자 선정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인 재 육 성과</b>	나. 분기별 지급	기안		○			
	16. 청소년보호 종합계획 수립		기안			○	
	17.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기안		○			
	18.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가.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안		○			
	나. 사전처분 통지	기안		○			
	다. 의무위반사항 시정명령	기안		○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형사고발	기안		○			
	마. 과징금(과태료)미납부자 체납(압류)처분	기안		○			
	바. 이의신청(행정소송) 처리	기안		○			
	사. 과징금 감경 결정	기안		○			
	아. 과오납금 환불	기안		○			
	자. 징수실적 보고	기안		○			
	19.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단속활동		기안		○		
	나.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홍보 및 기타 운영		기안	○			
	20.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지급	기안		○			
	21. 청소년보호법 교육 및 홍보	기안		○			
	22.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			기안		○	
	23. 청소년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기안		○			
	24. 사법경찰관리 관련업무	기안		○			
	25.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사항	기안		○			
	26.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가.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나.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금 지급	기안			○		
	다.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 사례관리	기안		○			
	27.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기안			○		
28. 청소년복지관련 단체 지원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재 무 과	1. 회계업무종합추진계획		기안			○	
	2. 회계문서 심사 및 지도						
	가. 회계문서 심사	기안	○				
	나.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	기안			○		
	다. 보건소, 출장소, 사업소, 동 회계지도		기안	○			
	라. 각 실과 일상경비 집행지도		기안	○			
	3. 예산·재무회계 결산						
	가. 지침서 작성 및 시달	기안		○			
	나. 결산안보고	기안					○
	다. 결산검사				○		
	(1) 결산검사 계획수립	기안					
	(2) 결산검사 결과보고	기안				○	
	(3) 지적사항추진 계획수립 보고 및 시달	기안		○			
	라. 의회 결산승인 요청	기안		○			
	마. 재정운용상황 공시	기안		○			
	4. 착공, 준공(납품서) 처리						
	가. 착공계 처리	기안		○			
	나. 준공계(납품서)처리	기안		○			
	5. 일상경비 정산서 심사	기안		○			
	6. 지출결산 증명						
	가. 국비지출계산서 작성	기안		○			
	나. 시·구비지출계산서 작성	기안		○			
	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기안		○			
8. 국비 원인행위 및 지출	기안		○				
9.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	기안		○				
10. 재정연감 작성보고	기안		○				
11. 국비·시비 및 일상경비의 정리	기안		○				
12. 회계관계증빙서류 보관	기안	○					
13. 공사 및 토지매입							
가. 예산집행 품의 [예정금액]							
(1) 2억원초과	기안					○	
(2) 2억원이하	기안				○		
(3) 1억원이하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재 무 과	(4) 2,000만원이하	기안		○			
	나. 경리관의 직무위임(계약) [추정가격]	기안			○		
	(1) 1억원초과	기안		○			
	(2) 1억원이하	기안					
	다. 검 수	기안	○				
	14. 제조·구매·용역						
	가. 예산집행품의 [예정금액]						
	(1) 1억원초과	기안					○
	(2) 1억원이하	기안				○	
	(3) 5,000만원이하	기안			○		
	(4) 2,000만원이하	기안		○			
	나. 경리관의 직무위임(계약) [추정가격]						
	(1) 5,000만원초과	기안			○		
	(2) 5,000만원이하	기안		○			
	다. 검 수	기안	○				
	15 기 타						
	가. 예산집행 품의 [예정금액]						
	(1) 5,000만원초과	기안					○
	(2) 5,000만원이하	기안				○	
(3) 3,000만원이하	기안			○			
(4) 2,000만원이하	기안		○				
나. 경리관의 직무위임(계약) [예정금액]							
(1) 500만원초과	기안			○			
(2) 조달에 관한사항 및 500만원이하	기안		○				
* 예정금액 :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한 가격(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							
다. 검 수	기안	○					
16. 검사 및 검수 입회명령	기안			○			
17. 자금송금 및 전도	기안			○			
18. 자금소요판단	기안		○				
19. 복식부기 일반							
가. 복식부기회계 추진계획수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재 무 과</b>	나. 복식부기 기본운영에 관한 사무	기안		○			
	20. 공인회계사 검토 결과 보고	기안			○		
	21 자산·부채 실사						
	가. 자산·부채실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보고	기안			○		
	22. 복식부기시스템 운영						
	가. 복식부기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나. 복식부기시스템 운영교육	기안		○			
	23. 복식부기회계원리 승인	기안○					
	24.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	기안	○				
	다.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	기안			○		
	라.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마. 물품관리 및 지도감독	기안		○			
	바. 물품관리 전환	기안				○	
	사. 물품사용 전환	기안			○		
	아. 재물조정	기안		○			
	25. 재물조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결과보고	기안				○	
	26.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가. 불용결정						
	(1) 총액 1,000만원이상, 건당 150만원이상 물품 및 생산물	기안				○	
(2) 총액 1,000만원미만, 건당 150만원미만 물품 및 생산물	기안		○				
나. 불용품 매각	기안		○				
다. 불용품 폐기	기안		○				
27. 국·공유재산 관리							
가. 관리계획수립 및 변경승인신청	기안				○		
나. 관리계획, 집행 결과보고, 실태조사	기안		○				
다. 관리지도 감독		기안	○				
라. 무상대부승인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재 무 과	마. 국·공유 사용허가승인	기안		○			
	바. 신규대부계약,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기안		○			
	사. 계속대부계약,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기안		○			
	아. 국·공유재산의 매각 가격결정	기안			○		
	자.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신청 및 관리환 신청	기안		○			
	차. 관리업무 질의회시		기안	○			
	카. 소관청 조회	기안		○			
	타. 용도폐지재산 인수인계지시	기안		○			
	파. 관리업무 제도개선			기안		○	
	하. 매각, 대부대금 납부 독촉	기안		○			
	거. 매각통보	기안		○			
	너. 등기업무	기안		○			
	더. 제증명 발급의뢰	기안	○				
	러. 매도증서 및 위임장 발부	기안		○			
	며. 시가감정 및 측량의뢰	기안		○			
	28.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						
	가. 환수재산, 소유권이전	기안			○		
	나. 무주재산 공고	기안				○	
	다. 소유권말소 소송		기안			○	
	라. 은닉재산신고 보상금 지급 및 설정	기안			○		
	마. 은닉재산 색출업무 지도감독		기안	○			
	바. 은닉재산 접수 상황보고	기안			○		
	사. 은닉재산 접수증 교부	기안	○				
	아. 은닉국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	기안				○	
	29. 공유재산취득, 처분 및 교환			기안			○
	30. 국유잡종재산 매각처분	기안				○	
	31. 기획재정부소관 재산관련 국가소송업무	기안				○	
	32. 공유재산관련 소송업무	기안					○
	33.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보고, 과오납금 환불						
	가. 국유재산	기안			○		
	나. 공유재산	기안			○		
	34. 국유잡종재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	기안			○		
	35. 국유잡종 재산의 분할, 합병신청 및 기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사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재 무 과	36. 국유잡종재산의 제대장 및 증서 보존	기안		○			
	37.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지정	기안			○		
	38. 차량관리						
	가. 차량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기안		○			
	다. 차종, 차량변경, 교체승인 및 조정	기안			○		
	라. 차량구입 및 관리전환	기안				○	
	마. 차량폐차결정 및 운영사항보고		기안		○		
	바. 차량등록말소 및 운영사항보고	기안		○			
	39. 차량운행 통제						
	가. 일일배차 결정 및 명령	기안	○				
	나. 유류지급 기준량 책정	기안	○				
	나. 주간, 월간 차량 점검 확인	기안	○				
	다. 차량운행일지 점검확인	기안	○				
	40.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기안			○		
	나. 경영수익사업 개발	기안			○		
	다. 경영수익사업 시행분석 및 결정	기안			○		
	41. 경영개발에 관한 사항						
	가. 민자유치 및 경영사업관리 운영	기안				○	
	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보고	기안		○			
	42. 경영수익사업 총괄지도감독	기안			○		
	43.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 심사분석	기안			○		
	44. 경영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	기안			○		
	45. 그 밖에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세 무 과</b>	1. 지방세 과세		기안			○	
	가. 과세종합계획 수립						
	나. 세목별 과세 세부추진계획	기안			○		
	다. 제세대장 직권등재	기안	○				
	라. 각종 재산조사 및 과세자료 수집	기안		○			
	마. 수납부 작성	기안	○				
	바. 과세대장 정리 및 보안관리	기안	○				
	사. 납세관리인 지정 및 변경	기안		○			
	아. 유관기관 자료수집, 협조 및 통보	기안	○				
	자. 부과, 취소 및 경정에 대한 세액조정	기안		○			
	차. 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	기안		○			
	2. 징수결의, 감액결의, 결손결의						
	가. 400만원 초과	기안			○		
	나. 400만원 이하	기안		○			
	3. 지방세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의견서 제출	기안		○			
	나. 이의신청 결정(구세)	기안			○		
	다.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안	○				
	라. 지방세 질의회시	기안		○			
	4. 일반세정						
	가. 지방세제도의 운영	기안			○		
	나. 납세홍보	기안		○			
	다. 세표작성 및 통계	기안		○			
	라. 재산조회 및 회보	기안	○				
	마. 수납부(소인)영수필통지서 관리	기안	○				
	5. 세수집계 및 보고						
	가. 징수상황 보고 및 세입전망 분석	기안			○		
	나. 제세과징 및 집계·현계표 작성	기안		○			
	다. 세입년도 및 과목조정	기안	○				
	라. 지방세 세입 일일대사	기안		○			
6. 지방세 민원일반							
가.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안○						
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일일결산	기안	○					
다. 지방세 기한연장(승인) 신청	기안		○				
라. 지방세 유예등의 신청	기안		○				
마. 취득·등록세 자진신고 접수처리	기안	○					
바.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 접수처리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세 무 과	(1) 1억원 이상	기안			○		
	(2) 1억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기안		○			
	(3) 1천만원 미만	기안	○				
	사. 자동차세일할계산 접수분 타기관통보	기안	○				
	아. 주택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 확인서발급	기안	○				
	7.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가. 은행계약 체결	기안		○			
	나. 자동이체신청 접수, 해지, 사고계좌 등 전산관리	기안		○			
	다. 지방세 자동이체에 따른 세입금 이체통보	기안		○			
	8. 자금수급관리						
	가. 자금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자금배정	기안		○			
	다. 자금차입 신청	기안				○	
	라. 회계간 자금전용(타지출원간)	기안				○	
마. 자금이월	기안		○				
바. 정기예금가입	기안		○				
9. 과오납 환불	기안		○				
10. 구 세입금 수납							
가. 구 금고 계약		기안			○		
나. 수납대행계약		기안		○			
다. 수납 지도·감독	기안		○				
11. 지방세 수납용 영수책 관리							
가. 영수책 제작		기안		○			
나. 영수책 수불		기안	○				
다. 영수책 검열		기안		○			
12. 세무공무원 교육		기안	○				
13. 세무공무원증 발급	기안		○				
14. 세무 주전산기 유지보수 및 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세 무 과	15. 재산세 과세일반						
	가. 건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결정 및 승인신청	기안				○	
	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고시	기안			○		
	16.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기안		○		
	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안		○			
	다.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기안		○			
	라. 세무조사 세부추진계획	기안		○			
	마. 탈세정보 및 조세범칙 사건처리		기안		○		
	바. 세원조사 실적보고	기안		○			
	17. 농업소득세 과세						
	가. 농업소득세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기안	○			
	나. 농업소득세 중간 예납 및 농업소득금액 조사결정		기안	○			
	다. 농업소득세 평균 필요경비 결정		기안		○		
	라. 농지기준 수확량 등급 조정		기안		○		
	18. 압류재산 공매	기안		○			
	19. 교부청구 및 경락대금 수령						
	가. 최고서·매각및매각결정기일통지서입찰 및낙찰기일통지서·배당기일통지서	기안	○				
	나. 교부청구	기안	○				
	다. 경락대금 수령	기안		○			
	20. 징수						
	가. 체납정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고지서 발송	기안	○				
다. 체납독촉 및 납세담보	기안		○				
라. 체납처분 유예		기안	○				
마. 체납액 징수유예		기안	○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사.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및 압류해제 촉탁							
(1) 자동차세체납차량 압류및 압류해제촉탁	기안	○					
(2) (1)이외의 압류 및 압류해제 촉탁	기안		○				
21. 체납액 사실조회	기안	○					
22.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및 해제	기안		○				
23. 관허사업 제한 및 철회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세 무 과	가. 소극적제한(체납경유 및 체납액확인)	기안	○				
	나. 적극적제한(허가취소·정지·제한요구)	기안		○			
	24. 체납자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요청	기안		○			
	25. 지방세 체납정리 일반						
	가. 지방세 신용카드 징수	기안	○				
	나. 지방세 계좌입금 징수	기안	○				
	다. 징수포상금	기안		○			
	라.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해제	기안	○				
	26. 채권관리 및 보고	기안			○		
	27. 개별주택가격						
	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계획	기안				○	
	나.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	기안		○			
	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공고	기안		○			
	라.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기안		○			
	마. 개별주택가격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바. 개별주택가격관련 예산관리	기안		○			
	사. 개별주택가격 공부 보존관리	기안		○			
	아. 개별주택가격 전산장비 관리	기안	○				
	자. 개별주택가격 일반사항	기안	○				
	차. 개별주택가격 홍보	기안		○			
	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안				○	
	타.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개최	기안				○	
	파.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기안				○	
	28. 세외수입						
	가. 세외수입 부과·징수계획 수립	기안			○		
	나. 세외수입 체납액정리계획, 결과보고	기안				○	
	다. 세외수입 통계 및 결산	기안			○		
	라.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도감독	기안		○			
	마. 세외수입 징수보고(월보)	기안		○			
	바. 세외수입 집계·과징현계표 작성	기안		○			
	사. 수수료, 사용료 요율 실태조사	기안		○			
	아.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기안		○			
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기안		○				
29. 기부금품 모집							
가. 기부금품 모집 허가		기안		○			
나. 기부금품 모집 단속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민 원 봉사과</b>	1. 문서의 수발						
	가. 문서의 접수 및 발송	기안○					
	나. 문서(전자문서)의 배부	기안○					
	다. 우편물 발송	기안○					
	2. 공인관리						
	가. 공인신조		기안		○		
	나. 공인개각 및 폐기		기안		○		
	다. 공인교부 및 등록	기안		○			
	라.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사용승인	기안		○			
	마. 공인관리실태 지도점검		기안		○		
	3. 기록물관리						
	가. 보존 기록물 관리	기안		○			
	나. 기록물 정리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기안		○			
	라. 기록물의 폐기	기안			○		
	마.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기안			○		
	바. 기록물 이관	기안		○			
	사. 보존기록물 열람 및 대출	기안○					
	아.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안		○		
	자. 기록물 운영 종합계획		기안		○		
	차. 기록관 운영	기안		○			
	카. 중요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기안		○			
	타. 기록물관리 일반사항	기안		○			
	파. 기록물관리시책 및 제도개선 계획수립		기안			○	
	4. 종합민원실 관리						
	가. 민원실 환경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복무감독	기안		○			
	5. 친절배가운동						
	가. 친절교육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친절도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친절교육강사 위.해촉			기안			○	
라. 친절교육강사 위탁교육 계획수립	기안				○		
마. 우리구의 친절공무원 표창계획	기안					○	
바. 친절공무원 산업시찰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6. 민원행정개선 및 지도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민 원 봉사과</b>	가. 민원행정개선		기안		○		
	나. 민원행정지도		기안	○			
	7.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운영상황평가 및 시책보완	기안			○		
	다. 추진상황 확인 및 독려	기안		○			
	라. 민원서류접수 및 이송	기안		○			
	마. 독촉장 발송	기안		○			
	바. 청구즉결민원 접수 및 교부	기안○					
	사. 민원후견인 지정	기안		○			
	아.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접수 및 이송	기안		○			
	8.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가. 종합민원 접수 및 통보	기안		○			
	나. 종합민원신고센터 종합추진계획	기안			○		
	9. 제증명·교부민원						
	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기안○					
	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대장	기안	○				
	다. 구술, 전화 또는 우편에 의한 접수처리	기안○					
	10. 인감업무 관리						
	가. 인감증명 발급 및 발급대장	기안○					
	11. 어디서나 민원처리 발급						
	가. 어디서나민원 업무처리지침 및 계획수립	기안			○		
	나. 어디서나민원 증명 및 교부	기안○					
	다. 어디서나민원 처리실적(분기보)	기안		○			
	라. 분기별 어디서나민원 처리비용 정산	기안		○			
	12. G4C민원 발급						
	가. 민원접수처리 및 권한부여	기안○					
	나. 민원 수수료 정산	기안		○			
	13.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가. 수수료 정산	기안		○			
14. 여권행정							
가. 수입대체경비 출납(영수필증 관리)	기안		○				
나. 전산망 유지관리	기안○						
15. 일반여권 발급신청 및 심사							
가. 여권발급 신청접수	기안○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민 원 봉사과	나. 여권발급 신청서 심사						
	(1) 심사	기안○					
	(2) 서류보완 등 미비사항 보완	기안○					
	(3) 신청서류 반송	기안		○			
	(4) 영수필증 환불	기안○					
	다.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	기안○					
	(2) 기타 재발급	기안○					
	라. 여권 기재사항 변경	기안○					
	마. 여권의 분실신고	기안○					
	바. 여권의 반납·보관	기안○					
	사. 여권발급 전산기록, 동명이인 전산조회	기안○					
	아. 수수료 면제	기안	○				
	자. 영문성명 정정신청 검사	기안○					
	차. 신원조회 미회보 및 검사	기안○					
	카. 재심사(해당자에 한함)	기안○					
	16. 여권 교부						
	가. 여권의 교부	기안○					
	나. 미수령여권 무효조치	기안		○			
	17.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가. 정기월보 작성보고	기안		○			
	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인구동태보고	기안		○			
	다.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	기안		○			
	라. 직권정정기록 허가신청	기안		○			
	마. 직권정정기록서	기안		○			
	바. 국적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	기안		○			
	사. 외국인과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기안		○			
	아.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자. 가족관계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한 최고	기안		○			
	차.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기안	○				
	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기안		○			
	타. 제적부 폐기인가 신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민 원 봉사과</b>	과.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열람 및 발급 18. 범죄자, 파산자대장 기록관리 가. 수형인명부 폐기 나. 선거인 피선거인 자격조사 다. 수형인명부 관리 라. 신원증명사항 조회 및 회보 19. 각종 보고관계 가. 청장 취임보고 나.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임명보고 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리보고 라. 제적부 반출보고 20.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	기안○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경제지원과</b>	1. 지역경제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기안				○
	2.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보급	기안			○		
	3.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	기안				○	
	4. 소비자 보호시책 수립 시행	기안		○			
	5. 물가지도관리 및 대책						
	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구성 운영	기안			○		
	다. 물가안정홍보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라. 물가동향 및 분석	기안	○				
	마. 개인서비스업소 행정지도 및 가격관리	기안	○				
	바. 물가모니터 제도운영	기안	○				
	사. 물가지도 단속	기안			○		
	6. 소비자 계몽과 교육	기안			○		
	7. 소비자 고발센터 등 소비자 보호	기안		○			
	8. 지역경제 동향관리	기안		○			
	9.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자금세제등의 지원	기안		○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기안			○		
	11. 월보 및 분기보고	기안		○			
	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기안		○			
	13. 시장에 관한 사무						
	가. 대규모점포 등록	기안			○		
	나. 관리자 지정	기안		○			
	다. 영업개시 등의 신고	기안		○			
	라. 양도승인 및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마. 등록 취소	기안		○			
	바. 보고 및 조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사. 시장개설자에 대한 권고	기안		○			
	아.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자. 재래시장 인정	기안			○		
	차.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 및 변경승인 신청	기안			○		
	카. 시장 상인회 등록	기안			○		
	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기안			○		
	파.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기안			○		
	14. 가격표시업소 지정 및 감독	기안		○			
	15.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기안			○		
	16.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	기안			○		
	17. 우수토산품의 개발 보급	기안			○		
	18. 공예품등 전문 생산업체 지원	기안			○		
	19. 토산품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 보호	기안			○		
	20. 담배 소매인에 관한 사무						
	가. 소매인의 지정	기안	○				
	나. 소매업 폐·휴업신고 수리	기안	○				
	다. 소매업 위치변경 승인	기안	○				
	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의뢰 사항	기안	○				
	마. 소매인의 지정취소	기안		○			
	바.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기안	○				
	21. 담배 도매업에 관한 사무						
	가. 도매업 신규등록	기안	○				
	나. 도매업 변경등록	기안	○				
	다. 도매업 휴·폐업 신고	기안	○				
	라. 도매업 등록취소	기안		○			
	마. 도매업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 조회	기안	○				
	22. 복권판매업 지도단속	기안			○		
	23. 방문판매업에 관한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신고	기안	○				
	다.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기안			○		
	라. 위반행위의 조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26.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가.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농정심의회구성 및 회의개최	기안	○				
	다. 국고등 보조사업수요조사	기안			○		
	라. 농림사업등 보조예산신청	기안			○		
	마.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개발	기안			○		
	바. 보조사업대상자선정 및 추진	기안		○			
	27. 농업단체지도육성						
	가. 농촌지도자 및 경영인 지원	기안		○			
	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육성	기안		○			
	다. 전업농업인육성 및 지원	기안		○			
	라. 농·축·수협등 협조관련사무	기안		○			
	28. 수도작관련업무						
	가. 쌀생산 기본계획수립 시행	기안			○		
	나. 벼식재 및 수확까지의 일반업무	기안		○			
	다. 병해충공동(지원)방제 추진	기안		○			
	라. 토양개량제 공급관련업무	기안		○			
	마. 가뭄대책 추진	기안			○		
	바. 생육비배관리 관련사무	기안	○				
	사. 벼보급종 공급등 종자개량	기안	○				
	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일반사항	기안	○				
	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선정	기안			○		
	29. 원예특용작물생산						
	가. 두류·서류·잡곡등 전작물생산	기안		○			
	나. 보리증산 및 수매등 맥류생산	기안		○			
	다. 화훼·원예등 소득작물생산	기안		○			
라. 과수·약용·유지 및 기초작물지도	기안		○				
마. 소득증대 보조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30. 한·수해 대책추진						
	가. 예산수반 한·수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수리시설물 개보수등 방침결정	기안			○		
	다. 수리시설물관리 관련 일반사항	기안	○				
	라. 양수장비 점검 정비등 관련사무	기안		○			
	마. 풍수해상황 조사(보고)	기안		○			
	바. 풍수해 복구계획 수립	기안		○			
	사. 복구비집행정산	기안		○			
	31. 농기자재유통 지도						
	가. 농약판매업 등 신고관련사무	기안		○			
	나. 농약 및 비료등 농기자재유통일반사항	기안	○				
	다. 각종농자재의 부정유통등 단속	기안		○			
	라. 농기계공급 및 유통관련 업무	기안		○			
	마. 보조농기기자재 공급 및 사후관리	기안		○			
	32. 농·수산물 유통관리						
	가. 원산지 표시지도단속	기안		○			
	나. 위반업소 처분(과징금부과등)	기안		○			
	다. 규격출하 장려 등 관련 사항	기안	○				
	라. 농수산물유통 협조사항 등 일반업무	기안	○				
	33. 양곡가공 및 수매 등 유통관련업무						
	가. 양곡수매기본방침 및 계획	기안		○			
	나. 양곡수매실시관련 일반업무	기안		○			
	다. 양곡유통 및 관련업소 지도단속	기안		○			
	라. 정부양곡관리 사무	기안		○			
	마. 양곡가공업 신고 및 사후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경제지원과</b>	34.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기안		○			
	나. 농지전용허가(협의)사항 취소	기안		○			
	다. 농지의 다용도일시전용허가 관련사항	기안		○			
	라. 농지전용신고 및 취소 관련업무	기안		○			
	마. 허가(협의) 및 신고농지 용도변경승인	기안		○			
	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기안		○			
	사. 과오납금 감액결정 및 환급업무	기안		○			
	아. 체납액 일소대책추진(각종처분등)	기안		○			
	자. 농지불법전용농지단속 및 조회	기안		○			
	차.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	기안		○			
	카. 농지이용실태조사등 관련업무	기안		○			
	타. 농지이용기본계획수립		기안			○	
	파.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기안		○			
	35.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기안	○				
	나. 토지거래 허가협의	기안		○			
	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처분명령	기안		○			
	라.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사무	기안		○			
	36.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가. 자경증명발급	기안	○				
	나. 자경사실조회 관련업무	기안	○				
	다. 농지원부 신규작성	기안	○				
	라. 농지원부 사본 발급	기안○					
	마. 농지원부 이송등 변경사항처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경제지원과</b>	37. 농림부소관 국유지관리						
	가. 관리상황 보고등 일반사항	기안		○			
	나.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기안		○			
	라. 국유재산의 관리 위임 위탁	기안		○			
	마. 변상금 부과등 불법사항조치	기안		○			
	38.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협의등)		기안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업무	기안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	기안		○			
	라. 농업기반시설의 일반관리사항	기안	○				
	39. 양축장려 및 사양관리						
	가. 보조사업개발 및 대상자조사	기안		○			
	나. 국·시비등 예산 신청	기안		○			
	다. 가축인공수정사 등록 및 감독	기안	○				
	라. 가축통계조사 관련업무	기안	○				
	마. 양축보조사업 추진일반사항	기안		○			
	바.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기안		○			
	사. 조사료 증산 관련업무	기안		○			
	40. 양축관련 인허가 사무						
	가. 종축업신고 및 사후관리	기안		○			
	나. 부화업신고등 관련사무	기안		○			
	다. 동물병원개설신고 관련업무	기안		○			
	라. 동물약품판매업 등록	기안		○			
	마. 양축관련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 및 허가증 재교부	기안○					
	바. 양축관련 인허가 업종의 변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41. 가축방역대책추진						
	가. 공수의 위촉	기안			○		
	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기안		○			
	다. 격리·이동제한 및 살처분	기안		○			
	라. 긴급방역대책 수립시행	기안					○
	마. 긴급방역대책 추진 일반사항	기안		○			
	42.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관련사항						
	가. 영업의 신고 및 허가	기안		○			
	나. 휴(폐)업·재개업 및 재교부신고	기안	○				
	다. 신고및허가사항의 변경 및 영업자 지위승계	기안	○				
	라.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기안		○			
	마. 위반업소 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등)	기안		○			
	바. 무허가 업소 단속 및 조치	기안		○			
	사. 축산물 신고및허가업소 폐쇄 명령	기안		○			
	43. 수산정책 추진등 일반사항						
	가.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기안				○	
	나. 어장관리실태조사등 관련업무	기안		○			
	다. 조업안전조업지도	기안		○			
	라. 불법어업단속 및 실적보고	기안		○			
	마. 어획고조사등 조업실태조사	기안		○			
	바.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업무	기안		○			
	사. 수산물 유통단속(월산지등)	기안		○			
	아. 수산동식물이식승인신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44. 수산분야 인허가사항						
	가. 연안업허가 및 변경	기안		○			
	나. 맨손어업등 신고어업의 처리	기안		○			
	다. 수산제조업관련업무	기안		○			
	라. 면허어업(양식·정치·공동어업)	기안		○			
	마. 신고어업(양어장·낚시업)	기안		○			
	바. 허가(신고)증 재교부	기안○					
	사. 어업 폐지신고	기안○					
	45. 어선관리						
	가. 어선등록	기안		○			
	나. 어선말소등록	기안	○				
	다. 어선등록사항 변경등록	기안	○				
	라. 어선등록원부사본 교부	기안○					
	마. 어선표지판 교부	기안○					
	바. 어선건조 및 개조 발주허가	기안		○			
	사. 등록어선 실태조사 및 보고	기안	○				
	아. 범칙어선 행정처분	기안		○			
	46.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						
	가. 설립신고	기안		○			
	나. 변경신고	기안	○				
	다. 해산처리	기안	○				
	라.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기안		○			
47.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	기안			○			
48.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	기안		○				
49.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기안		○				
50. 노동대책회의 운영(노사정협의회 운영)	기안				○		
51. 지역내 노사관계 동향과약 및 지원	기안		○				
52.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53.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						
	가. 공장설립승인	기안		○			
	나. 공장설립변경승인	기안	○				
	다. 창업사업계획승인	기안		○			
	라.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 승인	기안		○			
	마.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 변경승인	기안	○				
	바.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	기안	○				
	사.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	기안		○			
	아. 불법공장단속에 관한 사무	기안		○			
	자. 입지기준 확인	기안		○			
	차. 공장이전(예정)확인	기안○					
	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안	○				
	타. 공장등록(변경) 처리	기안	○				
	파. 기존공장폐쇄확인	기안○					
	하.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기안○					
	54. 산업동원에 관한 사항						
	가. 산업동원 업무계획 수립	기안				○	
	나. 산업동원 일반	기안		○			
	다. 산업동원 수정	기안		○			
	55.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정명령 및 검사대상 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	기안		○			
	나. 안전검사 대상업체 서류·장부등검사	기안		○			
	다. 공산품의 지도단속	기안		○			
56. 중소기업 육성							
가. 중소기업 육성시책 계획 수립		기안			○		
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안		○				
57.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무							
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나. 신용보증지원	기안		○			
	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기안		○			
	58. 광업관리 사무						
	가. 채광 재개신고	기안		○			
	나. 조광권의 휴지인가	기안		○			
	다. 광업 대리인 선임 신고	기안		○			
	라.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기안		○			
	59. 부정 전기용품 판매 및 사용금지에 대한 조사감독	기안		○			
	60. 영업관리						
	가. 영업개발 및 영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	기안		○			
	나.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기안		○			
	다. 청문에 관한 사항	기안		○			
	61.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등 계획 수립						
	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계획 수립	기안				○	
	나. 해외박람회 파견 등 계획 수립	기안				○	
	다. 해외지사화 사업 등 계획 수립	기안				○	
	62. 외국인 투자기업 조사 및 관리	기안		○			
	63. 산업단지에 관한 사무(청라산업단지)						
	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기안		○			
	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기안	○				
	다. 처분신청	기안		○			
	라. 처분신고	기안		○			
	64. 계량기에 관한 사무						
가.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단, 30톤이상 대형저울 및 전량눈새김 탱크로리 정기검사는 제외)	기안		○				
나. 계량기제작업 등록(변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변경)	기안	○				
	라. 계량 증명업 등록(변경)	기안	○				
	마. 실량 표시상품의 검사	기안		○			
	바. 비 법정 단위의 사용에 대한 단속	기안		○			
	사. 계량의 자치관리인정 및 지도감독	기안		○			
	아. 비 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신고	기안		○			
	자.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기안		○			
	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65.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	기안			○		
	66. 승강기 관리사무						
	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기안	○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기안		○			
	다.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기안		○			
	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기안	○				
	마. 승강기 검사연기 사무	기안	○				
	67. 고압가스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고압가스 (저장, 판매, 냉동제조)허가	기안		○			
	나. 고압가스 (저장, 판매, 냉동제조) 변경허가	기안	○				
	다. 고압가스제조(특정, 일반, 충전)허가	기안			○		
	라. 고압가스제조(특정, 일반, 충전)변경허가	기안		○			
	마.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사.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기안	○				
아. 고압가스 안전관리 지도, 점검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자. 허가취소와 사용정지 및 제한 명령	기안			○		
	차. 과징금의 부과, 징수	기안			○		
	카. 허가취소, 사용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따른 청문	기안		○			
	타.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변경명령	기안	○				
	파. 위해방지조치등	기안	○				
	하. 위임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거.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충전,냉동제조)	기안	○				
	너. 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기안	○				
	더. 지위승계신고	기안	○				
	68.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업, 집단공급 사업 허가	기안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업, 집단공급 사업변경허가	기안		○			
	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업 허가	기안			○		
	라.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업 변경허가	기안		○			
	마.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 설치허가	기안		○			
	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 변경허가	기안	○				
	사.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		기안	○			
	야.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허가		기안	○			
	자.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기안	○				
	차. 지위승계신고	기안	○				
	카. 허가 취소등의 처분	기안			○		
	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지도 점검	기안		○			
	파. 과징금의 부과 징수	기안			○		
하. 허가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징수에 따른 청문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경제지원과</b>	거.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변경명령	기안	○				
	너. 시험용품등의 수거 사업허가		기안	○			
	더.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러.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기안	○				
	며.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기안○				
	버. 보고, 검사 등	기안	○				
	서. 기타 충전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어.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기안	○				
	69. 도시가스업무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기안		○			
	나.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기안	○				
	다.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라.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기안	○				
	마.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수리, 개선 이전 및 사용정지 제한 명령	기안		○			
	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중지신고 수리 및 가스사용시설의 개선 명령	기안		○			
	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신고	기안○					
	아.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채용 기간연장 승인	기안○					
	자. 위임사무에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기안			○		
	차. 도시가스시설 시공자 및 공사계획 승인업체, 가스사용시설(주택,상가등)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검사점검 처분 및 사후관리	기안	○				
	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 경공사에 따른 시공감리등의 사후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경제지원과	타. 도시가스시설시공자 및 공사 계획 승인업체의 청문	기안		○			
	파.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보완조치	기안	○				
	하.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지원 및 사업 기금 관련 업무	기안			○		
	거. 특정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기안		○			
	70. 고압가스제조허가기준고시의 제정, 개정	기안				○	
	7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허가 기준 고시의 제정, 재정	기안				○	
	7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업 허가 기준고시의 제정, 개정	기안				○	
	73. 가스 안전관리 종합계획						
	가. 가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스 안전관리 제도 홍보	기안			○		
	다. 연료의 수급 및 조정	기안			○		
	74.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에 관한 사항						
	가. 신규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기안		○			
	나. 신규신고(일반판매소)	기안	○				
	다. 변경등록 및 신고, 지위승계, 보고	기안	○				
	라. 지도 점검에 관한사항	기안		○			
	마. 행정처분	기안			○		
	바.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제정, 개정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경제지원과</b>	75. 기타 가공탄 제조업 가. 신규등록 나. 지위승계 및 변경등록 76.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 가.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 계획 나. 검사기기 조종자 선임기간 연기승인 다. 검사기기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지시 라. 검사기기 설치검사 불합격에 따른지시 마.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관한 업무 77.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재 난 관리과</b>	1. 민방위업무의 운영			기안			○
	가.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			
	나. 동 및 직장민방위 계획의 작성	기안					
	다.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락 협조요청	기안			○		
	라. 민방위검열계획 및 실시	기안			○		
	2. 민방위시설장비						
	가. 민방위시설 설치	기안			○		
	나. 민방위 준비명령의 집행 및 확인		기안		○		
	다. 민방위 주요시설 보호계획	기안			○		
	라. 민방위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	기안			○		
	마. 민방위 준비명령의 집행 및 확인		기안			○	
	바. 민방위시설장비 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사. 민방위장비 전시회 개최	기안		○			
	아.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기안		○			
	3. 핵 및 화재방 방어에 관한 사항		기안	○			
	4. 민방위 홍보						
	가. 민방위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나. 민방위 홍보자료 수집	기안		○			
	5. 비상사태						
	가. 비상대비계획 조정 통제		기안				○
	나.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다. 전시행동계획 수립		기안				○
	라. 비상대비훈련 문제점 및 지도보고	기안			○		
마. 민방위 상황실 운영	기안				○		
6. 민방위대원교육 및 민방위 훈련							
가. 민방위의 날 훈련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시행	기안			○			
나. 민방위 현지교육 이수 통보	기안		○				
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재난 관리과</b>	라. 민방위간부 및 대원교육	기안			○		
	마. 등화관제 및 음향관제에 관한 사항	기안			○		
	7. 민방위대 재난통제			기안		○	
	가. 민방위 동원 및 운영						
	나.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통제	기안				○	
	다. 민방위 사태하의 소산 및 수송	기안				○	
	8. 민방위대 조직						
	가. 기술지원대 편성관리	기안				○	
	나. 시범민방위대 육성 운영	기안			○		
	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기안		○			
	라. 민방위대 지도 감독	기안		○			
	9. 충무계획 작성과 조정 통제	기안				○	
	10. 을지연습						
	가. 을지연습 계획수립	기안				○	
	나. 을지연습 사후보고	기안				○	
	다. 을지연습 문제점 및 진도보고	기안			○		
	11. 인력동원 실제훈련						
	가. 훈련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훈련 사후보고	기안				○	
	12. 주민신고조직 운영						
	가. 자체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주민신고망 조직개선	기안		○			
	다. 주민신고요원 교육	기안		○			
	라. 주민신고체제 점검지도	기안		○			
	13. 공익근무요원 관리						
	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기안		○			
	나.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통보	기안		○			
	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및 부서지정	기안		○			
라. 공익근무요원 연간 연가계획	기안		○				
마.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조사	기안		○				
바. 공익근무요원 해제자 보고 등	기안		○				
14. 비상대비훈련시 불시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관련 업무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재난 관리과</b>	15.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수립	기안		○			
	나. 건설안전체험교육 계획수립	기안		○			
	다. 어린이 안전교육 계획수립	기안		○			
	라. 제조업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기안		○			
	마. 화학공장 안전점검 계획수립	기안		○			
	16.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수립 시행						
	가. 연간홍보 및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나. 홍보·교육시행	기안		○			
	17.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위한 계획수립		기안			○	
	18.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계획수립	기안				○	
	19. 자연재해의 방재업무						
	가. 계획						
	(1)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기안			○		
	(2) 지진관련 종합대책	기안		○			
	(3) 풍수해 제외한 자연재해 방재계획	기안		○			
	나. 관리						
	(1) 재해위험지구 지정	기안				○	
	(2) 재해위험지구 관리	기안			○		
	(3) 유수지, 펌프장 및 배수문 등 재해 시설물 관리	기안		○			
다. 행위							
(1) 방재훈련 실시	기안			○			
(2)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	기안		○				
(3)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및 일정행위 금지 제한	기안			○			
(4) 재해 응급대책의 수립시행	기안			○			
라. 물자관리							
(1) 재해대책 물자확보 및 관리	기안		○				
20. 지역단위 재난관리 체계확립 및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재난 관리과</b>	가. 지역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재난 위험시설 또는 지역 등의 지정 해제	기안				○	
	다. 안전점검대상 시설 등 점검 및 관리	기안		○			
	라. 안전조치 명령 및 시정지시	기안		○			
	마.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계획	기안		○			
	21. 안전관리 지도						
	가. 각종시설물 안전관리 지도계획수립	기안			○		
	나.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공연행사장 안전대책 업무	기안		○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업무	기안		○			
	22. 재난관리기금 운용						
	가. 재난위험 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기안			○		
	나. 기금의 용자 및 지원대상자 결정	기안				○	
	다.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안				○	
	라. 재난관리 기금 결산보고	기안			○		
	23. 재난발생으로 인한 사고						
	가. 사고수습 계획 수립	기안			○		
	나. 재난활동 조사단 편성운영	기안			○		
	다. 응급조치 명령	기안		○			
	라. 피해시설의 복구	기안		○			
	마. 사고손실 보상 집행	기안			○		
	바. 사고 피해액 결과보고	기안			○		
	24. 재난상황실 종합관리 구축						
	가.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기안				○
	나. 재난대비 물자·장비 동원계획	기안		○			
25. 재난대비 훈련 실시 계획수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주민생활 지원과</b>	1. 주민생활지원						
	가. 종합계획수립			기안		○	
	나. 주민생활지원 각종 시책 추진	기안		○			
	다. 복지위원 관리	기안		○			
	라. 전산망 구축 및 관리	기안		○			
	마.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기안		○			
	2. 사회복지기금						
	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의료급여기금 관리운영	기안		○			
	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운영	기안		○			
	라. 장학금지급대상자 선정계획	기안			○		
	마.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정	기안		○			
	바. 장학금지급	기안		○			
	3. 저소득층 지원사업						
	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상환금관리	기안		○			
	나. 후원 및 결연사업 관리	기안		○			
	4. 의사상자 관리	기안		○			
	5. 긴급구호비	기안		○			
	6. 행여자(무연고) 사망자 처리						
	가. 행여자 등 시설 입소의뢰	기안	○				
	나. 행여사망자 발생처리 및 통보	기안	○				
	다. 행여환자 입원	기안	○				
	7. 부랑인 관리						
	가.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나. 부랑인 입·퇴소 심사	기안			○		
	8.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9. 보훈단체 지원						
가. 보훈단체 종합지원 계획수립	기안			○			
나. 보조금 지원	기안		○				
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주민생활 지원과</b>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조정	기안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민관협의체)운영	기안		○			
	11. 긴급복지지원사업						
	가. 선정 및 급여지급	기안		○			
	12.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가. 종합계획수립 및 보고		기안				○
	나.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	기안		○			
	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도감독	기안			○		
	라.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기안		○			
	13.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가. 기초생활수급자(특례포함)보장결정 및 통지	기안		○			
	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사	기안		○			
	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대상자 조사	기안		○			
	라.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조사	기안		○			
	마.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대상자 조사	기안		○			
	바.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변경 및 통지	기안	○				
	사. 복지급여대상자 전출입	기안	○				
	14. 자활지원사업						
	가.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자활사업실시기관 협의체운영	기안				○	
	다.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기안		○			
	라. 근로능력판정 및 조건수급여부 결정 및 통지	기안	○				
	마. 자활사업실시 및 인원배치	기안		○			
	바. 자활사업장 지도·점검	기안		○			
	사. 자활사업운영	기안		○			
	아. 생업자금융자 대상자 추천	기안		○			
자.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중지 결정	기안		○				
차. 자활사업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주민생활 지원과</b>	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수립	기안					
	나.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기안		○			
	다. 부정수급자 결정	기안			○		
	라. 부정수급자보장비용징수	기안		○			
	16.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가.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기안		○			
	나. 의료급여종별 변경 및 통지	기안	○				
	다. 의료급여대상자 전출·입 통보	기안	○				
	라. 전산입력 자료송부	기안○					
	마. 의료급여증명서발급	기안○					
	바. 의료보호증명서 발급	기안○					
	17. 의료급여기금 관리						
	가. 대불금 신청	기안		○			
	나. 대불금 상환통지	기안		○			
	다. 대불금 상환의무자 전출·입 통보	기안	○				
	라. 대불금 결손처분	기안			○		
	마.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급	기안		○			
	바. 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비 지급	기안		○			
	사.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기안		○			
	18.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사후관리						
	가. 중복청구 진료비 관리	기안		○			
	나. 상해외인 확인대상자 관리	기안		○			
	다. 연장승인	기안		○			
	라. 사례관리	기안		○			
	마.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기안		○			
	19. 기부식품제공시설						
	가. 예산집행관리	기안		○			
나. 운영실적 관리	기안		○				
20.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무							
가.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록	기안		○				
나.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기안		○				
다.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지도단속	기안		○				
라.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고발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주민생활 지원과	다. 국내유·무료직업소개소결격사유, 휴폐업등 자격조회	기안	○				
	21. 고용촉진 훈련사업						
	가. 고용촉진 훈련계획	기안			○		
	나. 고용촉진 훈련위탁	기안			○		
	다. 고용촉진 훈련기관 점검	기안		○			
	라.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	기안		○			
	마. 고용촉진 훈련 조정협의회 운영	기안			○		
	22. 실업대책 추진						
	가. 실업대책종합계획	기안				○	
	나. 취업정보센터 운영계획	기안		○			
	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월보)	기안	○				
	라. 구인·구직 안내 및 취업알선	기안○					
	23. 공공근로사업추진						
	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기안				○	
	나. 사업장 선정 및 대상자 선발	기안			○		
	다. 공공근로사업장 변경	기안○					
	라. 공공근로대상자 총원 및 교체지정	기안	○				
	마.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 및 관련업무	기안		○			
	바.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개최	기안				○	
	사. 공공근로사업 유형개발	기안		○			
	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실업대책 사업지원	기안		○			
	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점검	기안		○			
	차. 공공근로사업 일일보고	기안○					
카. 공공근로사업 월간 주간보고	기안	○					
타.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집행실적 및 집행계획 보고	기안		○				
파.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주민생활 지원과</b>	하. 국민연금 가입 및 관련업무	기안	○				
	거. 건강보험 가입 및 관련업무	기안	○				
	너.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업무	기안	○				
	24. 사례관리사업						
	가.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역자원 관리 운영	기안		○			
	다.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기안		○			
	라. 공무원 후견인제 운영	기안		○			
	마.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	기안		○			
	바. 사례관리사업 운영	기안		○			
	25. 긴급복지지원						
	가. 긴급지원대상자 결정	기안		○			
	나. 긴급지원대상자 의료비 청구	기안		○			
	다.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지급	기안		○			
	라. 긴급지원 급여 환수 및 반납	기안		○			
	26. 긴급지원 일반						
	가. 긴급지원 연간 계획 수립	기안					○
	나. 긴급지원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긴급지원 심의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라. 긴급지원 홍보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복 지 서비스과</b>	1. 장애복지분야 연간 및 정책관련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재가장애인보호사업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기안		○			
	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기안		○			
	라. 장애인 의료비	기안		○			
	마. 장애수당	기안		○			
	바. 장애인 등록 진단비	기안		○			
	사. 장애인증명서	기안	○				
	3. 장애인 편의시설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기안	○				
	마. 장애인편의시설 사용승인	기안		○			
	4. 시설입소 관련사항						
	가. 관련시설 입소	기안		○			
	5.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카드 신청	기안	○				
	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 통보	기안		○				
다. 자립자금 대여자 관리	기안		○				
7.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가. 전세주택관리	기안		○				
나. 임대주택 알선	기안		○				
8.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기안		○				
나. 기타 사회복지시설 수시 지원	기안		○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지도감독	기안			○			
9.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10.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설치 신고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복 지 서비스과	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변경, 폐지사향 처리	기안			○		
	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등변경신고	기안		○			
	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기안		○			
	11. 장사등의 관한 사항						
	가. 장례식장 현황 유지·관리	기안		○			
	나. 묘지,납골당, 화장장 설치 허가	기안				○	
	다. 무연고분묘 개장공고 허가	기안		○			
	12. 노인복지업무 연간 및 정책관련 사업계획수립			기안			○
	13. 노인정서 함양						
	가. 취미(교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다. 노인그룹활동 지도 및 노인소질 개발	기안		○			
	14. 상담 사업						
	가. 노인복지 상담	기안		○			
	나. 전문상담관 초빙	기안		○			
	다. 노인 취업알선	기안	○				
	15. 경로당						
	가. 신고	기안		○			
	나. 소재지·정원·명칭·시설장변경	기안		○			
	다. 폐·휴지신고 처리	기안		○			
	16. 노인 여가시설						
	가. 신고	기안				○	
	나. 소재지·정원·명칭·시설장변경	기안			○		
다. 폐·휴지신고 처리	기안		○				
라. 신고의 취소	기안			○			
마. 청문(신고의 취소)	기안			○			
바. 현황보고	기안		○				
사. 노인교실,노인휴양소 이용요금	기안		○				
아. 확충	기안				○		
17. 재가노인복지사업							
가. 재가노인복지사업 계획수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복 지 서비스과</b>	나. 가정봉사원 파견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신고	기안			○		
	마. 소재지·정원·명칭·시설장변경	기안			○		
	바. 폐·휴지신고처리	기안		○			
	사. 사업의 정지	기안			○		
	아. 확충	기안				○	
	자. 폐지명령	기안		○			
	차. 신고의 취하	기안		○			
	카. 청문(사업의 정지, 폐지명령, 허가의취소)	기안			○		
	타. 수납비용 신고	기안	○				
	파. 현황보고	기안		○			
	18. 노인일자리사업						
	가.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기안		○			
	19. 노인복지법 위반자 조치	기안			○		
	20. 노인복지업무 정기보고	기안		○			
	21. 노인복지 향상						
	가. 효행자발굴 추천 및 포상	기안					○
	22. 불우노인지원 및 결연사업	기안		○			
	23. 노인여가활동 지원						
	가. 모범 경로당 운영	기안		○			
	나.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기안		○			
	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기안		○			
	24. 노인복지시설						
	가. 설치신고	기안			○		
	나. 변경·휴폐지 신고	기안		○			
	다. 확충	기안				○	
	라. 지도점검	기안			○		
	마. 운영지원	기안		○			
	바. 종사자 임면보고	기안	○				
	사. 입·퇴소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복 지 서비스과	아. 비용수납신고	기안		○			
	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료지원	기안		○			
	25. 장기요양기관						
	가. 설치신고	기안			○		
	나. 변경·휴폐지신고	기안		○			
	다. 현지조사	기안			○		
	라. 종사자인력변경	기안	○				
	마. 입·퇴소처리	기안	○				
	바. 행정처분	기안		○			
	26. 노인건강진단						
	가. 노인건강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나. 노인건강진단실시자 치료 및 관리	기안		○			
	27. 경로사업실시						
	가.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	기안		○			
	나. 경로주간 행사 계획 수립실시	기안			○		
	28. 저소득노인관리						
	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계획	기안			○		
	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지원 및 관리	기안		○			
	다.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기안		○			
	29.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가. 보육시설 설치 보고						
	(1) 설치신고	기안		○			
	(2) 보육시설 변경 처리	기안		○			
	(3) 휴·폐지 신고	기안		○			
	나. 보육시설 운영						
	(1) 시설장 징계 의결요구 및 신청에 관한사항	기안		○			
	(2) 보육시설 운영지원·보고	기안		○			
다. 보육시설 행정처분	기안		○				
라.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기안			○			
마.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기안○						
바. 구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1) 보육시설설치(신, 증·개축 및 대수선 포함)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복 지 서비스과	(2) 보육시설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위탁운영 협약 체결	기안					○
	(4) 위탁단체 심의 및 선정	기안			○		
	(5) 위탁운영자 변경	기안			○		
	(6)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보조금 반환명령	기안			○		
	아. 지도점검 및 조치	기안			○		
	30. 보육시설의 아동보호						
	가. 보육대상 아동 소득조사	기안		○			
	나. 보육시설의 아동지원	기안		○			
	31. 여성복지사업 연간 및 정책관련 종합 계획수립(여성정책위원회 위·해촉포함)	기안					○
	32. 여성단체 육성지원						
	가. 여성단체협의회 지도·계몽	기안	○				
	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기안	○				
	다.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	기안		○			
	라. 상설알뜰장 운영 지원	기안	○				
	33. 여성교양 교육	기안		○			
	34. 윤락여성,요보호여성 상담사업	기안	○				
	35.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기안		○			
	36. 여성복지사업유공자 표창	기안					○
	37.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가. 급여지급	기안		○			
	나. 상담 및 관리	기안		○			
	다. 한부모 가정보호 지원업무 지도점검	기안		○			
	라.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의뢰	기안		○			
	마. 자매결연·위문	기안		○			
	바. 건강진단 실시	기안		○			
	사. 생업자금 융자	기안		○			
	38. 아동복지행정의 연간 및 정책관련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9. 요보호 아동선도 및 일시보호 의뢰	기안		○			
	40. 부랑아 단속 및 조치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복 지 서비스과	41. 아동 입양에 관한 사항	기안		○			
	42. 아동복지 단체의 지도육성	기안		○			
	43. 아동전용 시설의 운영	기안		○			
	44.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지정	기안		○			
	45.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						
	가. 실태조사 및 책정	기안		○			
	나. 급여지급	기안		○			
	46. 아동위원 위·해촉	기안					○
	47.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가. 아동의 친권상실 신고처리	기안		○			
	나. 아동의 후견인 선임창구	기안		○			
	48.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49. 결식아동에 관한 사항						
	가. 결식아동에 대한 운영 계획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포함)	기안			○		
	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기안		○			
	다. 결식학생 중식지원(토,공휴일)	기안		○			
	50.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나. 설치신고 및 인가	기안		○			
	다. 수용정원 변경, 임퇴소 관리	기안		○			
	라. 허가취소,사업정지,경고,시설장의 교체요구, 행정처분, 폐·휴지 신고처리	기안		○			
마. 비용보조							
(1) 경상적 보조	기안		○				
(2) 자본적 보조	기안		○				
바. 비용의 수납승인	기안		○				
사. 보조금의 반환 명령	기안		○				
아. 시설에 대한 지도	기안			○			
51. 건강가정센터							
가. 연간운영계획	기안					○	
나. 운영 및 지원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북 지 서비스과</b>	라. 위탁운영협약체결	기안					○
	마. 위탁단체 심의 및 선정	기안					○
	바. 위탁운영자 변경	기안					○
	사.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	기안		○			
	52. 아이돌보미 운영 및 지원	기안		○			
	53.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 연간운영계획	기안					○
	나. 운영 및 지원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위탁운영협약체결	기안					○
	마. 위탁단체 심의 및 선정	기안					○
	바. 위탁운영자 변경	기안					○
	54. 다문화 바우처 지원	기안		○			
	55. 결혼중개업 관리						
	가. 결혼중개업 등록신고	기안		○			
	나. 변경, 휴지, 폐지신고	기안		○			
	다. 결혼중개업소 지도점검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문화관광 체육과	1. 공연장 및 공연에 관한 사항						
	가. 공연신고(변경신고) 처리	기안	○				
	나. 공연장 지도감독 계획수립		기안	○			
	다. 공연장 지도감독 결과보고	기안		○			
	라.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처리	기안		○			
	마. 공연장 행정처분						
	(1) 경고	기안	○				
	(2)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부과	기안		○			
	(3) 등록취소	기안		○			
	2. 출판사, 인쇄소 관리						
	가. 등록(변경등록) 신청처리	기안		○			
	나. 간행물의 납본	기안	○				
	다. 지도감독 및 단속계획 수립		기안	○			
	라. 지도감독 및 단속 결과보고	기안		○			
	마. 행정처분						
	(1) 경고	기안	○				
	(2)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기안		○			
	(3) 등록취소	기안		○			
	3. 문화재관리						
	가. 문화재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문화재보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문화재보수 설계 작성	기안		○			
	라. 문화재현장 변경허가 및 설계승인	기안		○			
	마. 문화재보수 공사감독관 임명	기안		○			
	바. 문화재보수 공사 착공 및 준공보고	기안		○			
	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기안			○		
아. 보호구역지정 및 해제	기안		○				
자. 향토유적자료 보존관리	기안			○			
4. 시·구 문화예술(축제) 행사							
가. 행사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사 보조금 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문화관광 체육과</b>	다. 행사추진 결과보고		기안	○			
	5.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	기안				○	
	나. 관광사업등록(변경등록) 신청처리	기안		○			
	다. 유원시설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신고) 처리	기안		○			
	라.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처리	기안	○				
	마. 관광사업체 지도감독 계획수립	기안		○			
	바. 관광사업체 지도감독 결과보고	기안		○			
	사. 행정처분						
	(1) 개선명령, 경고	기안	○				
	(2)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부과	기안		○			
	(3) 등록(허가) 취소	기안		○			
	야.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처리	기안	○				
	자. 관광불편신고 처리	기안		○			
	차. 관광사업 등록증 등 재교부신청 처리	기안	○				
	6. 유통관련업자(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PC방, 비디오물관련) 관련						
	가.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 처리	기안		○			
	다. 지도단속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라. 지도단속 결과보고	기안		○			
	마. 행정처분						
	(1) 경고	기안	○				
	(2)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부과	기안		○			
	(3) 등록취소	기안		○			
	7.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 보조금 지원	기안		○			
다. 사업운영지도 및 육성	기안		○				
라. 등록 및 취소	기안		○				
8.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문화관광 체육과</b>	9.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시·구민생활체육대회 기본계획			기안			○
	11. 지방체육진흥계획 수립시행		기안			○	
	12.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기안			○
	가. 전문체육시설 설치기본계획			○			
	나. 전문체육시설 운영관리	기안					
	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기안				○	
	라.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	기안		○			
	13. 사회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가.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계획수립 시행	기안			○		
	나. 종목별 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다. 여가체육단체 기본조사 및 육성	기안		○			
	라. 직장체육진흥(운동경기부)에 따른 지도 점검	기안		○			
	14. 건전생활 관련 사항						
	가.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기안		○			
	15.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업 신고	기안		○			
나. 체육시설업 변경	기안		○				
다.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기안	○					
라. 지도·감독	기안		○				
마. 행정처분							
(1) 경고, 시정명령	기안	○					
(2) 과태료 부과, 고발	기안		○				
(3) 영업정지, 등록취소	기안		○				
16. 기타 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직장운동경기부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감독 및 선수 계약		기안				○	
다. 대회출전 및 훈련	기안		○				
18. 종교행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환 경 보전과</b>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배출(방지)시설 설치관리						
	가. 대기, 수질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기안		○			
	나. 소음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기안	○				
	다.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기안	○				
	라.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기안○					
	마. 환경관리인 교육(법정)	기안	○				
	바. 관련부서간 협의	기안		○			
	사. 기타오염수질원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아. 배출시설 허가취소(직권 취소)	기안		○			
	자. 대기, 폐수 오염도 조사	기안	○				
	차. 무허가 배출업소 고발 및 행정처분	기안		○			
	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기안		○			
	타.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안	○				
	파. 대기·수질 배출원 조사	기안		○			
	3.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항						
	가. 허가, 등록, 신고	기안		○			
	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안	○				
	다. 등록증등의 재교부	기안	○				
	라.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및 배출량조사	기안	○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나.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및 의견수렴	기안		○			
	다. 관련부서간 협의	기안		○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획 수립	기안			○		
	나. 징수결의	기안		○			
다. 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기안		○				
라. 독촉 및 가산금 조정 결의	기안		○				
마. 체납처분에 대한 등기압류 등록 촉탁	기안		○				
바. 체납자에 대한 등기압류 및 말소등록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환 경 보전과</b>	(1) 자동차 압류해제 등록	기안○					
	(2) 시설물 압류해제 등록	기안○					
	사. 감액 결의	기안		○			
	아. 결손처분	기안		○			
	6. 도양환경보전 업무(변경)						
	가. 도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기안	○				
	나. 도양오염유발시설 변경신고	기안	○				
	다. 도양측정망 관리	기안		○			
	7. 오존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오존경보제 계획 수립	기안		○			
	나. 오존경보제 시행 관련	기안		○			
	8. 환경기초자료 수집전산망 운영관련	기안		○			
	9. 명예환경감시원						
	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계획 및 정비	기안			○		
	나.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기안		○			
	10.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가. 배출업소 지도점검 종합계획		기안		○		
	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기안		○			
	다.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허가취소 제외)	기안		○			
	라. 배출시설 허가취소	기안		○			
	마. 조업시간등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	기안		○			
	바. 오염도검사의뢰	기안	○				
	사. 배출(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기안	○				
	11.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사항						
가. 비산먼지 발생원 신고수리	기안	○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기안	○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각종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12. 저유황유 사용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에 관한 사항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환 경 보전과</b>	가. 저유황유 사용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기안		○			
	나. 황합유량 검사의뢰	기안	○				
	다. 연료사용의 제한 및 변경명령 사업장 감독	기안	○				
	라. 유류생산판매 및 사용제한등을 명한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한 감독		기안○				
	13. 유독물 영업에 관한사항						
	가. 유독물영업자 지도감독	기안		○			
	나. 영업에 대한 고발 및 기타 행정처분 (등록 취소, 영업정지 제외)	기안		○			
	다.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제외	기안		○			
	14. 생활소음, 건설소음 규제 및 관리						
	가.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기안		○			
	15. 소음규제지역내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가.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기안		○			
	나.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수리	기안	○				
	16.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배출가스 및 매연단속	기안	○				
	나.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매연과다발산 신고차량배출 가스(매연)검사지시	기안○					
	17. 자동차 배출가스(정밀.특정경유차) 검사						
	가. 검사과태료 체납자 등기 압류해제	기안○					
	나. 검사 안내·독촉장 발송 및 연장신청	기안	○				
다. 검사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및 조정	기안		○				
라. 검사과태료 체납자 등기 압류촉탁	기안		○				
18. 공회전 관련업무							
가. 공회전 단속	기안	○					
나. 공회전 행정처분	기안○						
19.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관련업무							
가.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기안○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환 경 보전과</b>	나. 확인검사대행자 지도점검	기안	○				
	다. 확인검사대행자 행정처분	기안		○			
	20. 환경과태료 관련 사항						
	가. 체납처분에 대한 등기압류 촉탁	기안		○			
	나. 체납자에 대한 등기압류 해제등록 촉탁	기안○					
	21. 저수조 청소업 관련 사항						
	가. 저수조 청소업 허가(신고)	기안		○			
	나. 저수조 청소업 변경허가(신고)	기안	○				
	다. 저수조 청소업 법정교육	기안	○				
	라. 관련부서간 협의	기안		○			
	2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가. 유해조수 포획허가	기안		○			
	나. 야생조수 등 수출·입 허가	기안		○			
	다. 조수 인공사육 허가	기안		○			
	라. 수렵면허(갱신교부 변경)	기안	○				
	마. 박제업 등록, 변경, 갱신, 재교부	기안	○				
	바. 불법행위자 사건송치, 과태료부과	기안		○			
	23. 행정처분 사실 확인	기안○					
	24. 잔류성유기화학물질 관리						
	가. 관리대상기기 신고(변경)	기안	○				
	나. 오염기기 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배출시설 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25.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						
	가. 기후변화대응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기안		○			
	다. 기타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사항	기안		○			
26. 실내공기질 관리							
가. 실내공기질 계획수립 및 보고	기안		○				
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위생과</b>	1.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사항						
	가.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기안	○				
	나.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위생관리용영업,공중위생시설 신고	기안	○				
	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위생관리용영업,공중위생시설 변경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라.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기안○					
	마.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위생교육관리	기안		○			
	3.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기안○					
	4.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수거검사	기안		○			
	5. 식품위생종합계획 수립		기안			○	
	6.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	기안		○			
	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	기안	○				
	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기안	○				
	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폐업신고	기안○					
	7.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다. 식품접객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라.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기안○					
	8.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라. 식품제조가공업 폐업신고	기안○					
	마. 품목제조보고	기안○					
	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폐업신고	기안○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위생과</b>	10. 식품 소분·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식품 소분·판매업 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다. 식품 소분·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라. 식품 소분·판매업 폐업신고	기안○					
	11. 식품 운반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식품 운반업 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다. 식품 운반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라. 식품 운반업 폐업신고	기안○					
	12.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다.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라. 용기·포장류제조업 폐업신고	기안○					
	13.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위탁급식업 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다. 위탁급식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라. 위탁급식업 폐업신고	기안○						
14. 집단급식업소에 관한 사항							
가. 집단급식소 신고	기안	○					
나. 집단급식소 중단 신고	기안○						
15.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기안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기안○						
16. 조리사 면허증 발급	기안○						
17.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관리	기안		○				
18.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기안				○		
나.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위생과	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	기안		○			
	라. 식품진흥기금 용자 사업	기안		○			
	마. 식품진흥기금 조성	기안			○		
	바.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관리	기안			○		
	사. 식품진흥기금 용자업소 사후관리	기안		○			
	아.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	기안			○		
	19.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관련						
	가.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관리	기안			○		
	20. 모범업소등 지정에 관한 사항						
	가.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기안		○			
	나. 모범업소 지정 취소	기안		○			
	다. 한정식 특성화업소 지정 및 관리	기안		○			
	라. 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	기안		○			
	마. 외국인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관리	기안		○			
	21. 특색음식거리등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특색음식거리 지정 및 관리	기안			○		
	나.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정 및 관리	기안			○		
	다. 특색음식거리 지정 취소	기안			○		
	라.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정 취소	기안			○		
	22.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 종합계획		기안				
	23.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가. 식품접객업소지도점검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	기안		○			
	다. 식품접객업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라. 수족관수 및 냉면육수 수거검사	기안		○			
	마. 아동급식시설 지도점검	기안		○			
	바.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업무	기안		○			
사.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	기안		○				
아. 무허가, 무신고 업소 단속 및 고발	기안		○				
차.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2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사항							
가. 공중위생업소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위생과	다. 공중위생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목욕장업의 원수, 욕조수 수거검사	기안		○			
	마. 위생처리업의 물수건 수거검사	기안		○			
	바. 위생용품제조업의 위생용품 수거검사	기안		○			
	사.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기안			○		
	25.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기안				○
	26.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생관리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계획	기안		○			
	나.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기안		○			
	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	기안		○			
	마. 수입원료 사후관리	기안		○			
	바. 식품제조가공업 등급평가	기안			○		
	사. 식품제조가공업의 생산제품 수거검사	기안		○			
	아.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2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관리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점검계획	기안		○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기안		○			
	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28. 식품운반업 위생관리						
	가. 식품운반업소 점검계획	기안		○			
	나. 식품운반업소 지도점검	기안		○			
	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29. 식품판매업 위생관리						
	가.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계획	기안		○			
	나.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위생과	다. 식품판매업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30. 용기·포장류 제조업 위생관리						
	가. 용기·포장류 제조업소 점검계획	기안		○			
	나. 용기·포장류 제조업소 지도점검	기안		○			
	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31.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가.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계획	기안		○			
	나.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기안		○			
	다. 집단급식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32. 위탁급식업 위생관리						
	가. 위탁급식업 지도단속 계획	기안		○			
	나. 위탁급식업 지도단속	기안		○			
	다. 위탁급식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3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위생관리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단속 계획	기안		○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단속	기안		○			
	라.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34. 유통식품 안전관리						
	가. 유통식품 지도단속 계획	기안		○			
	나. 유통식품 지도단속	기안		○			
	다. 유통식품 위반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위반업소 사후관리	기안		○			
	마. 유통식품 수거검사	기안		○			
	바. 허위·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생관리	기안		○			
	사. 재래시장 위생관리	기안		○			
	35.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	기안					○
	36.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기안				○	
	37.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	기안					○
	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위촉	기안					○
	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기안		○			
	38. 식중독예방에 관한 업무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위생과</b>	39. 각종 보고에 관한 업무	기안		○			
	40. 위해식품등의 회수관리	기안		○			
	41.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처리 및 포상금운영	기안		○			
	4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계획	기안		○			
	나.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기안		○			
	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기안		○			
	라.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행정처분	기안		○			
	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기안		○			
	43. 식품 이물 민원처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청 소 행정과</b>	1. 청소에 관한 사항						
	가. 도로환경미화원의 관리	기안		○			
	나. 도로청소 및 청소차량 관리	기안		○			
	다. 쓰레기위탁처리 관리사항	기안		○			
	라. 쓰레기관련 민원업무 처리	기안		○			
	마. 특별 청소계획의 수립	기안		○			
	2. 생활폐기물 및 오수·분뇨·축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처리	기안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신고	기안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행정처분	기안		○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기안		○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휴무일 기동처리반 운영 관리	기안		○			
	바.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련업무	기안		○			
	4. 쓰레기종량제 업무 추진						
	가. 쓰레기종량제 관련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쓰레기종량제 관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쓰레기종량제 관련 홍보	기안		○			
	라. 쓰레기종량제 관련 민원업무처리	기안	○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계약 방침 수립		기안				○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 발급	기안	○				
	7. 생활폐기물처리실적 보고 및 관리	기안	○				
	8.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스티커 관리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청 소 행정과</b>	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스티커 제작 관련 업무	기안		○			
	나.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스티커 판매 수입금 관리	기안		○			
	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	기안		○			
	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9. 공공용쓰레기 봉투 관리 및 배부	기안		○			
	10. 명절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기안			○		
	11.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관리	기안		○			
	12. 청라자원환경센터 관련업무	기안		○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련업무						
	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계획 수립		기안				○
	나.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 관련업무	기안			○		
	다. 기타 수도권매립지 관련 업무	기안		○			
	14.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추진						
	가.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일반	기안		○			
	나.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	기안		○			
	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		기안				○
	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	기안		○			
	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관리	기안○					
	15.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사업추진						
	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사업추진	기안			○		
	나. 재활용품의 회수처리 및 실적	기안		○			
	다. 1회용품 사용규제	기안		○			
	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기안		○			
	마. 공공기관 폐기물 재활용	기안		○			
	바. 재생제품 사용 촉진	기안		○			
	16. 재활용 선별인부 관리	기안		○			
	17. 분노관련 영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청 소 행정과</b>	가. 설계시공·관리업 등록	기안		○			
	나. 분노의 수집운반 처리, 정화조 청소업 허가	기안			○		
	다. 분노관련 영업위반자의 각종 행정 처분·고발	기안		○			
	라. 지도감독		기안	○			
	18. 오수정화시설,분노정화조,축산폐수 시설 관리						
	가.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나. 위반자의 각종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다. 시설 지도·점검	기안		○			
	라. 시설 유지 관리	기안	○				
	마. 시설관리카드 관리	기안	○				
	바.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에 따른 배출 부담금 부과	기안		○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신설)	기안	○				
	아. 오수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기안	○				
	자. 정화조용량 확인	기안	○				
	19. 공중화장실 관련 협조 사항	기안		○			
	20.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21.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가. 축사의 이전 등 행정명령	기안		○			
	나. 법령 또는 명령위반자에 대한 조치	기안		○			
	22. 사업장/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						
	가. 사업(변경)계획서 처리	기안			○		
	나. 신규허가	기안		○			
다. 변경허가	기안		○				
라. 변경신고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청 소 행정과</b>	마. 휴업·폐업등 신고	기안	○				
	바.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3. 사업장/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기안	○				
	24. 사업장/건설/지정/의료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및 관리	기안○					
	25. 사업장 폐기물재활용신고						
	가. 신규신고	기안		○			
	나. 변경신고	기안	○				
	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휴업·폐업 등 신고	기안	○				
	26. 사업장/건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가. 신규 승인·신고	기안		○			
	나. 변경 승인·신고	기안	○				
	다. 사용개시신고(신설)	기안	○				
	라.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7. 폐기물배출자 신고						
	가.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	기안	○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안	○				
	다. 지정폐기물처리증명(의료성포함)	기안	○				
	28. 사업장/건설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 매립 등 지도·점검						
	가. 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9. 행정처분 사실 확인	기안○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건 설 과</b>	1.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가. 건설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기안			○		
	나. 건설사업 심사분석	기안		○			
	2. 국·공유지 관리						
	가. 행정재산(도로, 구거)용도 폐지		기안		○		
	나. 행정재산(도로, 구거)점·사용 허가						
	(1) 도로, 하천, 수익자 부담금 기본자료 조사 및 징수	기안		○			
	(2) 도로점용관련 사항						
	(가) 도로점용허가	기안		○			
	(나) 도로굴착허가	기안		○			
	(다) 누수 수리 등 긴급공사	기안		○			
	(라) 점용료 및 굴착복구비 징수	기안		○			
	(3)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가) 신규허가	기안		○			
	(나) 기간 연장 허가	기안		○			
	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연간 계획수립		기안			○	
	(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및 고발	기안		○			
	(나) 노점상 단속(근무일지)	기안	○				
	라. 공유수면(지정항만 구역외의 공유수면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1) 점·사용허가	기안		○			
	(2) 공작물 설치허가	기안		○			
	마. 점사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및 과태료	기안		○			
	바. 법규위반 고발	기안		○			
3. 전문 건설업에 관한 사항							
가. 등록면허 기재사항 변경	기안	○					
나. 등록면허 자진납부 및 재교부	기안	○					
다. 면허등록 및 갱신(주기적신고)	기안		○				
라. 양도, 양수 및 법인합병 인가	기안		○				
마. 폐업신고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건 설 과	바. 상속 인가	기안		○			
	사.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기안		○			
	아. 과징금 및 과태료	기안		○			
	4.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	기안		○			
	나. 등록사항변경등의 신고사항	기안	○				
	다. 골재채취업의 양도	기안		○			
	라. 등록 및 신고의 취소	기안		○			
	마. 골재채취선별·세척·과쇄신고	기안		○			
	바. 골재채취허가	기안					○
	5.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가. 세출결산 보고	기안		○			
	나. 지출계산 증명	기안		○			
	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1) 입찰 참가 등록	기안	○				
	(2) 계약체결 상황보고	기안	○				
	(3) 실적 증명	기안	○				
	(4) 입찰공고	기안		○			
	(5) 예정가격 결정	기안			○		
	(6) 견적서 제출 요구	기안	○				
	(7) 계약체결	기안			○		
	(8) 검사 및 검수입회 명령	기안	○				
	라. 채권 양도, 양수 승인	기안			○		
	6. 건설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가. 보상총괄계획	기안					○
	나. 감정평가 의뢰	기안			○		
다. 보상단가 책정	기안			○			
라. 보상협의 통지 및 촉구	기안			○			
마.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	기안			○			
바. 보상금 지출							
(1) 5천만원이하	기안				○		
(2) 3억원이하	기안					○	
(3) 3억원초과	기안					○	
사. 기공승락	기안			○			
아.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분할신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건 설 과	자. 미협의 용지 및 지장물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안				○	
	차.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1) 5천만원이하 (2) 3억원이하 (3) 3억원초과	기안 기안 기안			○		○
	7. 건설공사 시행 가. 도로개설, 교량건설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건설공사 시행 (1) 2천만원이하 (2) 1억원이하 (3) 2억원이하 (4) 2억원초과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다. 경미한 건설공사 변경	기안		○			
	라. 착공 및 준공	기안		○			
	마.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	기안		○			
	바.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	기안		○			
	사. 공법등 중요한 변경	기안			○		
	8. 도로정비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도로유지 관리 (비포장도로 포함)	기안		○			
	다. 수로원 관리	기안	○				
	라. 도로환경 순찰	기안	○				
	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기안		○			
	9. 교량관리 가. 교량점검	기안		○			
	나. 교량정비 계획	기안			○		
	10. 도로시설물 관리 가. 난간관리 및 보수	기안		○			
	나. 도로표지판 설치	기안		○			
	다. 교통사고 처리	기안	○				
	라. 위험시설물 응급복구	기안		○			
	마. 위험시설물 항구복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건 설 과	11. 기타사항						
	가. 제설작업 실시	기안		○			
	나. 사도개설허가	기안		○			
	다. 가로명 부여	기안			○		
	라. 도로의 노선인정, 폐지, 변경		기안				○
	12.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						
	(1)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조정에 대한 검토	기안		○			
	(2) 계측기 설치 및 교체	기안	○				
	(3) 하수도업 종별 책정 및 변경	기안	○				
	(4)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	기안	○				
	(5) 사용료 세입징수액 보고	기안			○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1)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2) 원인자부담금 세입징수액 보고	기안		○			
	13. 공공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						
	가.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 작성		기안		○		
	나.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	기안			○		
	다.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기안		○			
	라. 공공하수도대장 작성·관리	기안	○				
	마.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기안		○			
	바. 배수설비 설치 신고(협의)	기안		○			
	사.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 (협의)	기안	○				
	아.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기안		○			
	14. 지방하천 유지관리						
가. 하천대장의 관리	기안	○					
나.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기안	○					
15. 소하천 유지관리							
가. 소하천 지정 및 폐지		기안				○	
나. 소하천 예정지 지정		기안				○	
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라.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기안		○			
마.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건 설 과	바. 소하천대장 작성	기안	○				
	사.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기안		○			
	아. 소하천의 점용허가 및 신고	기안		○			
	자.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기안		○			
	차. 점용등의 징수	기안		○			
	카.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기안		○			
	16.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 허가 및 신고	기안		○			
	나. 수질검사봉인 및 이용 실태조사	기안		○			
	다. 지하수오염방지 명령	기안		○			
	라.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기안			○		
	마. 수질검사	기안	○				
	바.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등록, 양도, 양수등	기안		○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양도, 양수등	기안		○			
	17. 전기공사 시행						
	가. 연간 사업계획		기안		○		
	나. 2천만원이하	기안		○			
	다.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기안			○		
	라. 1억원초과 2억원이하	기안				○	
	마. 2억원초과	기안				○	
	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기안		○			
	사. 공사착공 및 준공	기안		○			
	아. 공사관련 업무협의	기안		○			
	자. 경미한 설계 변경(예산수반 없는변경)	기안	○				
	차.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기안		○			
	18. 전기사업법관련 업무						
	가.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 출입허가		기안	○			
	나.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허가		기안	○			
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개선명령	기안		○				
라. 전기공급의 정지 요청	기안		○				
19. 전기공사업법관련 업무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건 설 과	가. 전기공사업자의 실태조사	기안		○			
	20. 주택법관련 업무(공동주택 전기분야)						
	가. 사업계획승인	기안		○			
	나. 경미한 설계변경	기안	○				
	다. 사용검사	기안		○			
	21. 전원개발사업법관련 업무						
	가.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협의	기안		○			
	22.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가. 가로등시설물,보안등 신설 및 교체	기안		○			
	나. 가로등시설물,보안등 이설협의	기안		○			
	다. 도로조명시설 검사 및 안전점검	기안		○			
	라. 가로등사역인부 관리	기안	○				
	마. 가로등시설물 인수·인계	기안		○			
	바. 가로등 유지보수(보수작업일지)	기안	○				
	사. 가로등 민원처리(민원처리대장)	기안	○				
	아. 가로등 교통사고 처리	기안	○				
	자. 가로등 굴착관련 업무	기안	○				
	차. 가로등 자재관리(자재수불부)	기안	○				
	23.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 검사 및 안전점검	기안		○			
	나. 시설물 인수·인계	기안		○			
	24.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 검사 및 안전점검	기안		○			
	나. 시설물 인수·인계	기안		○			
	25. 타부서 업무협의						
	가. 공공시설물 관련	기안		○			
나. 가로등 관련	기안		○				
다. 건축협의	기안	○					
라. 안전점검	기안		○				
마. 공동주택 지원업무	기안		○				
26. 독거노인 거주주택 전기점검 시행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건 축 과	1. 건축행정건실화 계획			기안		○	
	2.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위반건축물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위반건축물 정비	기안		○			
	라. 위반건축행위 지도·단속	기안		○			
	마. 시정명령	기안		○			
	바. 위반건축주 등 고발	기안		○			
	사. 행정예고문 발부	기안		○			
	아.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기안			○		
	자.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예고	기안		○			
	차.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카. 이행강제금(과태료)이의제기관련 업무	기안		○			
	타. 이행강제금(과태료)채납관리	기안		○			
	파.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기안		○			
	3. 항공측량 관련업무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항공측량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정비실적 관리	기안		○			
	4. 가설건축물 관리						
	가. 가설건축물 허가	기안	○				
	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안	○				
	다. 가설건축물준치기간 연장신고	기안	○				
	라. 가설건축물 유지관리	기안	○				
	5. 용벽등 공작물축조신고	기안	○				
	6. 건축관련 질의 회신	기안		○			
	7.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기안○					
8. 건축허가취소	기안			○			
9. 건축허가·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허가사항 변경 포함)							
가. 동당 연면적 2,000㎡미만 건축물							
(1) 건축허가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협의	기안	○					
(4) 보완요구	기안	○					
(5) 처리기간 연장 통보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건 축 과</b>	(6) 반려·불가 처리	기안		○			
	(7) 취하원·취소원 처리	기안○					
	나. 동당 연면적 2,000㎡이상 10,000㎡ 미만인 건축물						
	(1) 건축허가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협의	기안		○			
	(4) 보완요구	기안		○			
	(5) 처리기간 연장 통보	기안		○			
	(6) 반려·불가 처리	기안			○		
	(7) 취하원·취소원 처리	기안○					
	다. 동당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1) 건축허가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협의	기안		○			
	(4) 보완요구	기안		○			
	(5) 처리기간 연장 통보	기안		○			
	(6) 반려·불가 처리	기안				○	
	(7) 취하원·취소원 처리	기안○					
	10.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가. 착공신고	기안○					
	나.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착공신고	기안	○				
	다. 착공연기 신고	기안	○				
	11.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신고사항변경, 대수선신고, 용도변경신고 포함)						
	가. 신고수리	기안	○				
나. (임시)사용승인	기안	○					
다. 관련기관(부서)협의	기안	○					
라. 보완요구	기안	○					
마. 처리기간연장통보	기안	○					
바. 반려·불가 처리	기안		○				
사. 취하원·취소원처리	기안○						
12.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유지관리 점검(하자보수 포함)	기안		○				
나. 시공중인 건축물 점검 계획	기안			○			
다. 시공중인 건축물 점검결과 조치	기안		○				
라.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조치	기안		○				
마. 건축물행정전산화 관련 업무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건 축 과	13.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						
	가. 발급 및 열람	기안○					
	나. 기재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지번변경사항 정리(합병,분할,구획정리 사업 등)	기안○					
	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대장정리	기안○					
	마. 소유권 변경사항 정리	기안○					
	바. 사용승인에 의한 대장작성 및 정리	기안○					
	사. 건축물대장및기재등에관한운영계획	기안○					
	14. 건축물 통계	기안	○				
	15.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기안○					
	16.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기안	○		
	17.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안	○			
	18.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가.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1)1,000세대미만	기안		○			
	(2)1,000세대이상	기안			○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안		○			
	다. 착공신고	기안	○				
	라. 감리보고 처리	기안	○				
	바. 경미한 변경처리	기안		○			
	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기안		○			
	아.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안		○			
	자.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	기안	○				
차. 위반건축물 고발조치	기안		○				
19. 공동주택 관리							
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기안○						
나.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서 명의변경	기안○						
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	기안○						
20. 조합주택 설립에 관한 사항							
가. 설립인가	기안		○				
나. 조합신고	기안		○				
다. 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	기안		○				
라. 재건축안전진단 기관등록 및 선정	기안		○				
21. 시영 및 국민주택공급(분양)	기안		○				
22. 행위허가 및 신고	기안○						
가. 사용검사	기안○						
23.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자 등록(변경)	기안○						
나. 임대조건 신고	기안○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건 축 과	24. 주택건설관련 시공자,감리자,설계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치	기안		○			
	25. 공동주택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기안			○		
	26.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기안			○		
	2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안		○			
	28. 청사 및 구 발주 공용건축물 신·증축용역·공사감독						
	가. 공사(용역) 착수보고	기안		○			
	나. 공사(용역) 자재승인	기안		○			
	다. 공사(용역) 기성검사	기안		○			
	라. 공사(용역) 실정보고	기안		○			
	마. 공사(용역) 준공(정산)검사	기안		○			
	29.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가. 공사시행 및 감독	기안		○			
	나. 자재구입	기안		○			
	30. 구청사 시설물 관리용 자재기구의 출납 보관	기안	○				
	31. 구 소유 건축물 보수공사 감독 (단, 보건소, 동주민센터, 검단출장소제외)	기안		○			
	32. 구청사시설관리 용역업체 지도 감독						
	가. 용역설계 (과업지시서)		기안	○			
	나. 용역업체 지도감독	기안		○			
	다. 청소등 일일보고	기안	○				
	33.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증감액 2천만원이하	기안		○				
나. 설계변경 증감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기안			○			
다. 설계변경 증감액 1억원초과 2억원이하	기안				○		
라. 설계변경 증감액 2억원 초과	기안				○		
3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업무							
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도시개발과	1. 보상물건 취득						
	가. 보상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상계획 공람공고	기안		○			
	다.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라. 감정평가 의뢰 및 사정	기안		○			
	마. 보상가격 책정						
	(1) 2억원이상 보상	기안				○	
	(2) 2억원이하 보상	기안			○		
	(3) 1억원이하 보상	기안		○			
	(4) 2,000만원이하 보상	기안		○			
	바. 보상협의 통보	기안		○			
	사. 계약 체결	기안		○			
	아. 보상물건 실태조사 계획수립	기안		○			
	자. 보상물건 실태변경	기안		○			
	2. 토지(체비지) 관리						
	가. 관리계획 및 매각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비지 관리	기안		○			
	다. 체비지 매각	기안			○		
	라. 체비지 대부	기안		○			
	마. 체비지 예정가격 결정	기안			○		
	3. 환지처분						
	가. 환지청산금 징수·교부계획 수립		기안				○
	나. 징수 및 감액결의	기안		○			
	다. 청산금 징수·교부 통보	기안		○			
	라. 과오납금 환불	기안		○			
	마. 체납처분	기안			○		
	바. 체납액 결손	기안			○		
사. 등기촉탁	기안		○				
4.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기안					○	
나.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	기안					○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도시개발과	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안					○
	마. 도시개발 관련 행위허가	기안		○			
	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신청	기안				○	
	5.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						
	가. 환지계획 수립	기안			○		
	나. 환지계획 인가	기안					○
	다.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신청 처리	기안		○			
	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기안		○			
	마. 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기안					○
	6. 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공사설계 및 감독 지정	기안		○			
	7.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기안					○
	나. 공사 기성부문 검사	기안		○			
	다. 공사중지·해제 및 연기원 처리	기안		○			
	라. 각종 재료시험 의뢰	기안		○			
	마. 공사용 자재 출납 및 보관	기안		○			
	바. 대지조성 원가 산정보고	기안			○		
	사. 착공 및 준공검사	기안		○			
	아. 보상 물건 조사보고	기안		○			
	자. 전면 책임감리 관련 사항	기안		○			
	차. 지장물건이전 및 철거 대집행	기안			○		
	※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 규정을 준용함						
	8.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구의 지정 요청	기안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지적고시	기안		○			
	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기안			○		
라. 도시관리계획사업 시행인가	기안			○			
마.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사항 및 손실 보상	기안		○				
바. 학교시설 사업협의	기안		○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고시	기안			○			
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기안				○		
자. 다른 도시관리계획사업							
(1)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기안			○			
(2) 실시계획 관련 협의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도시개발과	(3) 준공인가 및 공고	기안		○			
	9.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 행위허가 승인신청서 전달	기안		○			
	나. 관리계획 대상 행위허가	기안			○		
	다. 행위허가	기안		○			
	라. 행위신고	기안		○			
	마. 착공신고	기안	○				
	바. 준공신고	기안		○			
	사. 취하원·취소원	기안○					
	아. 승인 및 허가신청서 보완지시	기안	○				
	자. 행위기간 연기	기안		○			
	차. 관리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카. 정기단속 및 결과보고	기안		○			
	타. 위법행위 단속						
	(1) 행위자 고발	기안		○			
	(2) 대집행 영장발부	기안		○			
	(3) 행정계고서	기안		○			
	(4) 조치계획수립	기안		○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기안		○			
	(6)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7) 이행강제금 채납관리	기안		○			
	(8)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기안		○			
	파. 항측판독 및 처리결과 보고	기안		○			
	하. 가설건축물 행위허가	기안		○			
	거. 가설건축물 행위신고	기안		○			
	너. 용도변경 허가	기안		○			
	더. 용도변경 신고	기안		○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선정 검토 및 결정 신청		기안				○	
(2) 공람공고	기안		○				
(3) 구의회 의견 청취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도시개발과	나. 정비계획(변경)수립		기안				○
	(1) 정비계획(안) 입안	기안		○			
	(2) 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3) 주민공람공고	기안		○	○		
	(4) 구의회 의견 청취	기안		○			
	(5) 정비구역지정신청	기안		○			
	(6)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7) 기타행정사항	기안	○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밀안전진단						
	(1)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기안		○			
	(2) 안전진단실시 여부 결정	기안		○	○		
	(3) 안전진단의 시행	기안		○			
	(4) 안전진단의 결과 보고	기안		○			
	(5) 기타행정사항	기안	○				
	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 승인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기안		○	○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	기안		○			
	(3) 기타행정사항	기안	○				
	마. 조합설립(변경)인가						
	(1) 조합설립인가	기안		○	○		
	(2) 조합설립변경인가	기안		○			
	(3) 기타사항	기안	○				
	바.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공람 및 의견청취	기안		○			
	(2)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	기안		○	○		
	(3) 기타사항	기안	○				
	아. 관리처분(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결정	기안		○			
(2) 관리처분인가 및 고시	기안		○			○	
(3) 관리처분변경인가 및 고시	기안		○	○			
(4) 기타사항	기안	○					
자.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1) 준공검사 등 관련부서 협의	기안		○				
(2)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기안		○	○			
(3) 준공인가증 교부	기안		○				
(4) 기타사항	기안	○					
차. 감독							
(1) 정비사업추진실적 보고	기안		○				
(2) 추진위원회의 점검 등	기안		○				
(3) 정비사업의 행정처분(취소, 변경, 정지 등)	기안	기안		○			
(4) 기타사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도시개발과</b>	11. 개발행위(토지형질) 허가						
	가. 허가 및 변경	기안		○			
	나. 준공검사	기안		○			
	다. 서류보완지시 및 관련기관 협의	기안	○				
	라. 취하원 처리	기안○					
	12.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						
	가. 허가 및 변경(일반지역)	기안		○			
	나. 허가 및 변경(산림지역)	기안			○		
	다. 준공검사	기안		○			
	라. 서류보완지시 및 관련기관 협의	기안	○				
	마. 취하원 처리	기안○					
	13. 개발행위(물건적치) 허가						
	가. 허가 및 변경	기안		○			
	나. 서류보완지시 및 관련기관 협의	기안	○				
	다. 취하원 처리	기안○					
	14. 무단 개발행위 단속						
	가. 원상복구 지시	기안		○			
	나. 행정조치	기안		○			
	다. 행정대집행	기안			○		
	15. 도서종합개발 계획						
	가. 도서종합개발 계획		기안			○	
	나. 도서개발사업 계획	기안			○		
	16. 국·시책관리 대상사업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가. 실·과 업무 협의	기안		○			
나. 공람·공고 시행	기안		○				
다. 구 의견 취합 및 결과 통보	기안		○				
라. 사업 전반에 관한 구 내부 방침	기안					○	
마. 보상관련 열람 및 공고	기안		○				
바. 보상관련 공시·송달	기안		○				
사. 기타 보상 관련 사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녹지경관과	1. 공원보상		기안				
	가. 보상총괄계획 및 수립				○		
	나. 보상대상현황 계획수립	기안			○		
	다. 감정평가 의뢰	기안		○			
	라. 보상단가 책정	기안		○			
	마. 보상협의 통지 및 촉구	기안		○			
	바.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	기안		○			
	사. 보상금 지출						
	(1) 2천만원이하	기안		○			
	(2) 1억원이하	기안			○		
	(3) 2억원이하	기안				○	
	(4) 2억원초과	기안					○
	사. 기공승락	기안		○			
	아.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분할신청	기안		○			
	자. 미협의 용지 및 지장물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안				○	
	차.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1) 1억원이하	기안			○		
	(2) 2억원이하	기안				○	
	(3) 2억원초과	기안					○
	2. 조립 및 육림						
	가. 종합계획수립			기안	○		
	나. 조립, 육림지도	기안	○				
	다. 임목등록 및 변경	기안	○				
	3. 산림 보호						
	가. 산지전용허가(신고)	기안		○			
	나. 산림보호단속 및 부정임산물 단속	기안		○			
다. 산지전용협의	기안		○				
라. 적지복구 설계승인 및 준공	기안		○				
마. 과태료 부과	기안		○				
바. 사건송치(고발)	기안		○				
4. 임정 및 임업금융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녹지경관과	가. 산림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산림개발기금		기안		○		
	5. 도시녹화						
	가. 녹지대 설치계획	기안			○		
	나. 사후관리 및 보식	기안		○			
	6. 종묘판매업 등록	기안	○				
	7. 산지오염 방지						
	가. 산지오염 방지계획		기안	○			
	나. 위반자 사건송치	기안		○			
	8. 산불예방 및 진화						
	가. 산불예방 종합계획	기안			○		
	나. 상여금 지급청구	기안		○			
	다. 입산통제구역지정 및 해제		기안	○	○		
	라.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기안	○				
	마. 사건 송치	기안		○			
	바. 과태료 부과	기안		○			
	사. 입산·입화허가	기안		○			
	9. 산림내 건조물관리(도시계획지역외)						
	가. 불법건조물 지도단속	기안		○			
	10. 산림보호 무선국 운영						
	가. 무선국 운영 종합계획	기안		○			
	나. 통신보안 점검	기안	○				
	11. 산림병해충 방제						
	가. 산림병충해방제 계획	기안		○			
	나. 산림병충해 방제효과 분석	기안		○			
	12. 산사태 예방 복구						
	가. 산사태 복구 조사 및 시행	기안		○			
	13.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가.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정 및 해제요구		기안	○				
다. 행위 제한	기안		○				
라. 사후관리	기안	○					
14. 기념식수 동산 운영							
가.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기념식수 동산 운영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녹지경관과	15. 사방						
	가. 사방사업 기본계획			기안	○		
	나. 사방지 지정 및 해제	기안		○			
	다. 사방지 사후관리	기안	○				
	16. 가로수 식재 및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사후관리 및 보식	기안		○			
	17. 산지구분						
	가. 산지이용 구분	기안		○			
	나. 보전산지 지정고시	기안				○	
	다. 보전산지 관리	기안		○			
	18. 민유림 별채						
	가. 별채 허가	기안		○			
	나. 별채 신고	기안		○			
	다. 불법행위자 사건송치	기안		○			
	19. 임산물 굴, 채취						
	가. 임산물 굴, 채취 허가	기안		○			
	나. 임산물 굴, 채취 신고	기안		○			
	다. 적지 검사 및 단속	기안	○				
	20. 임업통계						
	가. 임산물 통계조사	기안		○			
	21. 보안문서 생산관리						
	가. 보안계획 수립	기안		○			
	22.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조경협의						
	가. 조경심의·준공검사	기안		○			
23. 산림공익근무요원 지도관리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급여, 수당, 제복구입 등	기안		○				
다. 현장지도 감독	기안○						
2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기안		○				
나. 과오납금 반환	기안		○				
25. 산림내 채석, 토사채취 허가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녹지경관과	가. 산림내 채석, 토사채취 허가		기안		○		
	나. 채석, 토사채취 허가기간 연장		기안		○		
	다. 채석장 관리 및 지도		기안	○			
	26. 녹지종합계획 수립						
	가. 녹지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입안		기안			○	
	나. 녹지조성 기본계획 용역 준공	기안		○			
	다. 녹지조성 기본계획 승인신청	기안		○			
	라. 녹지조성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발주	기안		○			
	마. 녹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준공	기안		○			
	바. 녹지조성 기본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안		○			
	27. 공유재산중 임야 관리						
	가. 관리계획수립 및 변경승인 신청	기안				○	
	나. 관리계획 집행 결과보고	기안		○			
	다. 관리지도 감독	기안		○			
	라. 무상대부승인	기안			○		
	마. 공유매각 사용허가 승인	기안		○			
	바. 신규대부계약	기안		○			
	사. 계속대부계약	기안		○			
	아. 공유재산의 매각 가격결정	기안			○		
	자. 관리청 지정 및 관리전환	기안		○			
	차. 관리업무 질의회시	기안		○			
	카. 소관청 조회	기안		○			
	타. 용도폐지재산 인수인계지시	기안		○			
	파. 관리업무 제도개선			기안		○	
	하. 매각, 대부대금 납부 독촉	기안		○			
	거. 매각통보	기안		○			
	28. 공유재산취득, 처분 및 교환		기안				○
	29. 공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기안			○		
	30.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가.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입안		기안				○
나. 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발주	기안		○				
다.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녹지경관과	라. 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준공	기안		○			
	마. 공원조성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용역발주	기안		○			
	바. 공원조성실시설계 용역준공	기안		○			
	사. 공원, 녹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인가 신청	기안		○			
	31. 공원조성사업 및 녹지시설 계획						
	가. 공원조성(녹지설치)공사 시행	기안				○	
	나. 공원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기안		○			
	다. 공원용지 토지 및 지장물 매수계획 수립	기안			○		
	라. 공원용지 측량	기안		○			
	마.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	기안			○		
	32. 공원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가. 공원시설물 정비계획 및 공사시행	기안		○			
	나. 공원관리 인부사역 및 감독	기안		○			
	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기안		○			
	라. 공원시설 사용허가(관리위탁) 미 취소	기안		○			
	33. 점용허가 및 사후조치						
	가. 공원, 녹지 점용허가 및 취소	기안		○			
	나. 공원, 녹지 점용료 징수	기안		○			
	다. 공원, 녹지 점용허가자 사후관리	기안		○			
	라. 공원, 녹지 공공사업 협의	기안		○			
	34. 도시공원 시범사업						
	가. 도시공원 시범사업 계획수립	기안			○		
	35.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						
가.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36. 완충(석남.가좌) 종합계획 수립							
가. 완충녹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완충녹지 기본계획용역 착공 및 준공	기안		○				
다. 완충녹지 기본계획 승인신청	기안		○				
라. 완충녹지조성 실시계획인가 신청	기안		○				
마. 완충녹지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기안		○				
37. 완충녹지(석남.가좌) 조성사업							
가. 완충녹지 공사 시행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급	팀장급				
녹지경관과	나.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기안		○			
	다. 완충녹지공사 착공 및 준공	기안		○			
	38.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가. 유동광고물 신고	기안○					
	나. 고정광고물 신고	기안	○				
	다. 고정, 옥상광고물 허가 및 변경	기안		○			
	라. 옥상광고물 연장	기안		○			
	마. 안전도검사 의뢰	기안	○				
	39. 광고물관련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가.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광고물 전수조사	기안		○			
	40.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계고서 발부	기안	○				
	다.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	기안		○			
	라. 고발	기안		○			
	마. 행정대집행 및 영장발부	기안			○		
	바. 정비상황 보고	기안		○			
	41. 광고물 제작 협의관리						
	가. 옥외광고물업 등록 및 변경	기안		○			
	나. 옥외광고업 폐업신고	기안	○				
	다.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라. 행정조치	기안		○			
	42. 도시경관 관련업무						
	가. 도시경관 사업계획	기안					○
	나. 도시경관 협의	기안		○			
	43. 도시경관사업공사						
가. 2천만원 이하	기안		○				
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기안			○			
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기안				○		
라. 2억초과	기안					○	
마.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기안		○				
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기안		○				
사. 공사착공 및 준공	기안		○				
아. 공사관련 업무협의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녹지경관과	자. 경미한 설계변경	기안		○			
	차. 공사중지 및 공사시간 연장	기안		○			
	카. 공모전 공고	기안			○		
	44.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증감액 2천만원이하	기안		○			
	나. 설계변경 증감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기안			○		
	다. 설계변경 증감액 1억원초과 2억원이하	기안				○	
라. 설계변경 증감액 2억원 초과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토지정보과	1. 토지정보 주요업무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개발이익의 환수제							
	가.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기안		○				
	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다.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및 허가	기안		○				
	라. 개발부담금의 물납신청 처리	기안		○				
	마. 개발부담금 심사청구 결과 통지	기안		○				
	바.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기안		○				
	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 보고	기안		○				
	아. 개발부담금 납입 물납 실적 보고	기안		○				
	자.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전 심사 청구	기안		○				
	차.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및 허가	기안		○				
	카. 개발비용 산출	기안		○				
	타. 거래가격 신고 및 결과 통지	기안		○				
	3. 기반시설부담금							
	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기안		○				
	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다.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및 허가	기안		○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물납신청 처리	기안		○				
	마. 기반시설부담금 심사청구 결과 통지	기안		○				
	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독촉	기안		○				
	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기안		○				
	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유예	기안		○				
	자.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차. 기반시설부담금 개별공시지가 평균 고시	기안				○		
	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 보고	기안		○				
	타. 기반시설부담금 납입 물납 실적 보고	기안		○				
	파.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전 심사 청구	기안		○				
	하.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및 허가	기안		○				
	4. 부동산 중개 업무							
	가. 등록취소	기안		○				
	나. 업무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다.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라. 부동산중개업법 운용 지도·감독	기안		○					
마.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및 협회 지도·감독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토지정보과	바. 등록	기안		○			
	사.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기안○					
	아. 재교부 신청	기안○					
	자. 사무실 이전 신고	기안○					
	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고발	기안		○			
	카. 기재사항 변경 신고	기안○					
	타. 사용인 신고	기안○					
	파. 개설등록에 따른 신원조회 의뢰	기안○					
	5.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가. 투기단속 및 중개업소 지도 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나. 부동산 투기우려지역 집중 단속	기안		○			
	6. 부동산 계약서 검인	기안○					
	7. 부동산실거래 신고 업무						
	가. 부동산실거래 신고 처리	기안○					
	나. 부동산실거래 계약해제·변경 등 신고	기안○					
	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위반자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8. 주택거래신고 업무						
가. 주택거래신고처리	기안○						
나.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9. 부동산 실명제 운용							
가. 부동산실명제 업무	기안		○				
나. 부동산실명제 신고의무위반사항 조사	기안		○				
나. 부동산실명제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10. 외국인 토지거래 업무							
가. 외국인 토지거래 취득허가	기안		○				
나. 외국인 토지거래 취득·상속 등 신고	기안○						
다. 계속 보유 신고	기안○						
라. 외국인 토지법 위반자 과태료 조사	기안		○				
마. 외국인 토지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1. 지적관리업무의 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12. 지적측량 성과 검사	기안		○				
13. 등록사항 정정	기안		○				
14. 신규등록	기안		○				
15. 토지(임야) 분할정	기안		○				
16. 등록전환	기안		○				
17. 토지(임야) 합병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토지정보과	18. 토지 지목변경	기안		○			
	19. 토지이동지 검사 및 정리	기안		○			
	20.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보존관리	기안		○			
	21. 지적공부 보존관리	기안		○			
	22. 지적측량대행법인 업무 지도 확인	기안		○			
	23.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기안		○			
	24. 집계표 정리	기안	○				
	25. 연말 현재액 보고	기안		○			
	26. 지적공부 목록 보고	기안		○			
	27.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기안		○			
	28. 지적복구에 대한 사항	기안			○		
	29.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부 정리	기안		○			
	30. 지적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1.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32. 지적 전산운영 기본계획	기안				○	
	33. 지적전산 장비 관리	기안		○			
	34. 미등기 주소 등록	기안		○			
	35. 법인가인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기안	○				
	36. 부동산 등기용 등록 증명서 발급	기안	○				
	37.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리 및 자료정리	기안	○				
	38. 토지정보관련 민원 업무						
	가. 토지(임야)대장 발급	기안	○				
	나. 지적(임야)도 발급	기안	○				
	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기안	○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기안	○				
	마. 환지예정지증명원 발급	기안	○				
	바.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관련 제증명 공용발급	기안	○				
	39. 지적전산 업무						
	가. 사용자 권한 관리(부여,변경,삭제 등)	기안		○			
	나. 지적전산 토지이동 오기 정정	기안		○			
	다. 지적전산 논리 오류 정비	기안		○			
	라. 소유권 정리(이전,주소변경 등 등기필)정리	기안	○				
	마. 소유권 오기 정정	기안		○			
	40. 공유토지분할특별법에 관한 업무						
	가. 공유토지분할업무 추진계획	기안				○	
	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의결	기안				○	
	다. 공유토지분할서류 송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토지정보과	라. 공유토지분할서류 열람·등본 발급	기안○					
	마. 공유토지분할 신청	기안		○			
	바. 분할개시결정의 송달 및 공고	기안		○			
	사. 공유토지분할 조사·측량	기안		○			
	아. 공유토지분할 청산	기안		○			
	4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가.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기안		○			
	나. 공고 및 공고사실 통지	기안		○			
	다.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기안		○			
	라. 확인서발급 및 대장정리	기안		○			
	42. 국토정보센타자료이용(조상땅찾기)	기안		○			
	43. 토지거래 허가 업무						
	가. 토지거래 허가	기안		○			
	나. 권고 및 협의	기안		○			
	다. 선매자 지정 통보	기안		○			
	라. 토지거래 불허가	기안			○		
	마. 토지이용실태 조사	기안		○			
	- 이용목적위반에 따른 이행의무 촉구	기안		○			
	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기안		○			
	사. 토지거래허가신청 취하	기안		○			
	아. 토지이용목적변경 승인 신청	기안		○			
	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조사	기안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처분 예고	기안		○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기안		○			
	45.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사실 조사	기안		○				
나.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 체납처분	기안		○				
46. 체납정리위원회 운영·관리							
가.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기안				○		
나. 체납정리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기안		○				
다. 체납액납부독촉 및 압류 등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토지정보과	47.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		기안			○	
	48. 개별공시지가 검증 의뢰	기안		○			
	49.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관리						
	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기안				○	
	나.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기안				○	
	50.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공고	기안		○			
	51. 의견접수 심의 및 처리	기안		○			
	52. 지가확인 요청	기안		○			
	53.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기안		○			
	54. 개별공시지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55. 개별공시지가 예산 관리	기안		○			
	56. 개별공시지가 장부 보존관리	기안		○			
	57.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58.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등	기안		○			
	59.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기안○					
	6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안				○	
	61. 개별공시지가 홍보	기안		○			
	62. 도로명주소사업 업무총괄 및 종합계획수립						
	가. 도로명주소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무	기안			○		
	63. 도로명주소 부여에 관한 업무						
	가. 도로구간 기초조사	기안		○			
	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기안			○		
	다. 도로명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기안		○			
	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의 작성 및 비치	기안	○				
	마. 건물번호부여 신청접수 및 처리	기안	○				
	바. 도로명기본도 작성	기안	○				
	64.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무						
	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기안		○			
	나.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기안		○			
	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기안			○		
라. 도로명주소 D/B구축 및 관리	기안		○				
마.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업무	기안		○				
65. 도로명주소 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가. 사용자 권한 관리(부여, 변경, 삭제 등)	기안		○				
나. 오류사항 조사 및 정비	기안		○				
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신청, 심사, 관리 등)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토지정보과</b>	66.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가. 안내도 제작 및 배부 나.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다.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기안 기안 기안		○ ○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교 통 행정과</b>	1.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가. 계획수립 및 조정		기안			○	
	나. 교통대책추진						
	(1) 교통시책 추진계획		기안		○		
	(2) 교통공안협의	기안		○			
	(3) 교통안전대책 수립	기안			○		
	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1) T.S.M 지역사업 추진		기안		○		
	(2)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의뢰	기안		○			
	(3)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안		○			
	라.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기안			○		
	2. 교통영향평가 심의진달						
	가.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및 송달	기안		○			
	나. 교통영향평가서 대상지 의견제출	기안		○			
	다. 종합의견 진달	기안			○		
	라. 이행실태점검 및 사후점검 제출	기안		○			
	3.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정						
	가. 기초자료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부과징수 사항						
	(1) 부과(징수결의)	기안			○		
(2) 수납사항 소인	기안	○					
(3) 부과징수사항에 관한 보고	기안		○				
다. 과오납 환불	기안		○				
라. 체납액결손처분	기안			○			
마.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이의							
(1)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					
(2) 이의신청 결정	기안	○					
(3)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안	○					
4. 주·정차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운영		기안			○		
나.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1) 단속계획 수립	기안		○				
(2) 위반자동차 관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교 통 행정과</b>	(3) 단속원의 관리운영	기안	○				
	(4) 주·정차단속원증 발급	기안		○			
	(5) 주·정차위반단속에 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				
	(나) 이의신청 결정 및 보정요구	기안	○				
	(다) 이의신청 청문(전용차로에 한함)	기안	○				
	(6) 소방차 진입훈련 실시	기안	○				
	다.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과징						
	(1) 부과징수 대장관리	기안	○				
	(2) 수납사항 소인 및 일일결산	기안	○				
	(3) 체납액 결손처분	기안			○		
	(4)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가) 압류	기안			○		
	(나) 압류해제	기안	○				
	(5) 과오납 환불	기안			○		
	라. 공영(노상·노외)주차장설치 및 관리						
	(1)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		기안				○
	(2) 설치계획 수립	기안			○		
	(3) 설치계획 집행	기안			○		
	(4) 주차장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5) 주차장관리 계획변경	기안			○		
	(6) 주차장 폐지	기안			○		
	(7)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사항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계약 및 해지	기안			○		
	(다) 지도·감독	기안			○		
	(라) 기타 일반사항	기안			○		
마. 민영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1) 설치통보 수리	기안			○			
(2) 사업변경사항 신고수리	기안			○			
(3) 주차장운영 지도감독	기안			○			
(4)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실시	기안			○			
(5) 휴업 및 폐지통보 수리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고 통 행정과</b>	바. 견인대행업소 관리						
	(1). 견인대행업소 지정	기안			○		
	(2) 견인대행업소 지도관리	기안		○			
	5.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협의 및 관리	기안		○			
	6.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가.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세부추진	기안		○			
	7. 내집앞 주차장건립사업						
	가. 내집앞 주차장건립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Green Parking사업추진	기안		○			
	다.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기안		○			
	8.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변경 협의	기안	○				
	9. 건축물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지도감독	기안		○			
	10.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안		○			
	11.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	기안		○			
	12. 주차장 현황 관리						
	가. 공영주차장 현황 관리	기안		○			
	나. 노상주차장 현황 관리	기안		○			
	다. 노외주차장 현황 관리	기안		○			
	라. 부설주차장 현황 관리	기안		○			
	13.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기안		○			
	나.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공고	기안		○			
다. 무단방치 행위자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교 통 민원과</b>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기안		○			
	나. 운행정지 및 면허취소	기안		○			
	다.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	기안		○			
	라. 사업의 상속, 휴지, 폐지	기안		○			
	마. 사업의 허가사항 신고	기안		○			
	바. 허가 이관	기안		○			
	사. 사업개선 명령	기안		○			
	아. 운임,요금, 운송 약관의 인가	기안		○			
	자. 공동운수 계약협정 및 변경	기안		○			
	차. 유류보조금 지급	기안		○			
	(1) 유류보조금 카드 승인	기안○					
	(2) 수기분 지급계획 수립	기안			○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의 등록 및 취소	기안		○			
	나. 운임 및 요금수리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	기안		○			
	라. 영업소 설치 신고	기안		○			
	마.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기안		○			
	바. 약관 및 정관 변경 신고	기안		○			
	3.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관한 업무						
	가. 공영차고지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영차고지 관리	기안		○			
	다. 차고지설치확인	기안		○			
	라. 화물자동차(건설기계)주박차 단속	기안		○			
	마. 단속요원 관리 및 운영						
	(1) 단속요원 채용 계획 수립	기안			○		
	(2) 단속요원 관리	기안		○			
(3) 단속요원 일지 작성	기안	○					
4.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교통 민원과	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안		○			
	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기안		○			
	라. 일반택시 양도·양수	기안			○		
	마.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기안		○			
	바. 사업의 휴지 및 폐지	기안		○			
	사.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기안	○				
	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신고	기안		○			
	5.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승강장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승강장 관리	기안		○			
	다. 대중교통 건의사항 처리	기안		○			
	6.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계획 변경	기안		○			
	나.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기안		○			
	다. 사업개선명령	기안		○			
	라. 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기안		○			
	마. 사업의 상속신고	기안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업무						
	가. 대여사업 변경등록	기안		○			
	나. 대여사업 개선명령	기안		○			
	다. 대여사업 약관 및 변경신고	기안		○			
	라. 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	기안		○			
	마. 대여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기안		○			
	바. 대여사업 상속신고	기안		○			
	사.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기안	○				
	아. 대여사업 지도감독	기안		○			
	8. 교통불편신고 및 법규위반처리						
	가.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부과, 면허취소 등)	기안		○			
	나. 이의신청	기안		○			
	다. 청문실시	기안		○			
	라. 수납사항 소인	기안	○				
	마. 부과징수 사항에 관한 보고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교 통 민원과</b>	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1) 압류 및 과오납 환불	기안	○				
	(2) 압류 해제						
	9. 교통 특별수송대책 수립		기안	○			
	10. 교통안전대책 수립	기안			○		
	11.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기안		○			
	12. 충무계획 수립	기안					○
	13.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업무						
	가.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기안		○			
	나. 위반행위자 과태료부과	기안		○			
	다.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기안		○			
	14.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단, 수임사무범위내)						
	가. 자동차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다.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기안		○			
	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기안		○			
	마. 자동차관리사업의 행정처분 및 이의 신청처리	기안		○			
	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공고 정지명령	기안		○			
	사. 자동차관리사업 휴, 폐업 신고	기안	○				
	아.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기안		○			
	자.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차.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의 단속 및 처분	기안		○			
	카.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자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기안		○			
15.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가. 불법자동차 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 불법자동차 단속	기안		○				
다.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	기안		○				
라.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기안		○				
마. 자동차 정비,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교 통 민원과</b>	바. 불법자동차 과태료 처분						
	(1) 수납사항 및 일일결산	기안	○				
	(2) 부과, 징수 사항에 관한 보고	기안		○			
	(3)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가) 압류등록 촉탁	기안		○			
	(나) 과오납 환불 및 결손처분	기안		○			
	(다) 압류해제 등록 촉탁	기안	○				
	사. 불법자동차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처리	기안		○			
	16.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 증명서류 제출 요청	기안	○				
	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처분						
	(1) 수납사항 및 일일결산	기안	○				
	(2) 부과, 징수 사항에 관한 보고	기안		○			
	(3)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가) 압류등록 촉탁	기안		○			
	(나) 과오납 환불 및 결손처분	기안		○			
	(다) 압류해제 등록 촉탁	기안	○				
	다.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이의신청 및 처리	기안		○			
	17. 특별사법경찰업무(무보험운행)						
	가. 사건접수	기안		○			
	나. 사건조사	기안		○			
	다. 내사종결	기안		○			
	라. 사건송치	기안		○			
18.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가. 사용신고	기안	○					
나. 변경, 폐지, 재교부 신고	기안						
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봉인제작 지시등 관리	기안	○					
라.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	기안	○					
마. 점검 및 정비명령	기안		○				
바. 양도증명서 교부	기안	○					
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현황보고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교 통 민원과</b>	19. 자동차 제증명 발급						
	가. 등록원부 발급	기안					
	나. 사실증명원 발급	기안					
	다. 각종 공부발급(FAX민원포함)	기안					
	20. 자동차관련 통계현황 작성	기안		○			
	21. 차적조회	기안		○			
	22.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신규등록, 등록증 교부	기안					
	나.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기안					
	다.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	기안					
	라. 자동차등록번호판 확인 및 확인표교부	기안					
	마.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안					
	바. 자동차 변경등록	기안					
	사. 자동차 말소등록	기안					
	아. 자동차 이전등록	기안					
	자. 자동차 부활등록	기안					
	차. 수출말소이행여부신고	기안					
	23. 자동차저당권 설정 및 말소	기안					
	24. 자동차 가압류, 압류등록 및 말소에 관한사항						
	가. 압류 및 가압류	기안	○				
	나. 압류해제	기안	○				
	25. 압류등록 불가처리 통보	기안		○			
	26. 자동차전산자료 발취관리(승인대장)	기안	○				
	27. 자가용사용신고 처리	기안					
	28.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및 강제이전	기안		○			
	29. 자동차 검사						
	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기안	○				
	나. 계속검사 경과차량 검사명령	기안	○				
	다. 계속검사 연기신청 처리	기안					
	라. 검사명령 미이행자 고발처리	기안		○			
	30. 봉인 재교부	기안					
31. 자동차번호 교부통지	기안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교 통 민원과</b>	32.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안○					
	33. 회수된 자동차등록번호판 폐기	기안		○			
	3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기안○					
	35.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지도감독		기안	○			
	36.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 신규(부활)등록	기안		○			
	나. 건설기계 등록이전(전입)신고	기안○					
	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안○					
	라.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설정, 이전, 변경, 말소)	기안○					
	마. 건설기계 압류등록(해제) (타 관청(부서)의 촉탁에 의한 것에 한함)	기안○					
	바. 건설기계 압류등록(해제)	기안○					
	사. 건설기계말소(수출, 폐차, 도난, 멸실)	기안○					
	아. 건설기계 직권말소	기안		○			
	자.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및 번호판, 봉인 제작 명령서 재교부	기안○					
	차.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차대번호)	기안		○			
	카. 건설기계등록원부 경정	기안○					
	타.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교부	기안○					
	파.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의 발급 및 열람	기안○					
	하. 건설기계등록원부 송부(요청)	기안○					
	거. 건설기계 강제이전	기안		○			
	너. 건설기계 폐번호판 처리	기안		○			
	더. 건설기계 휴지, 폐지, 재개 신고	기안		○			
	37.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 정비명령	기안		○			
	나.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기안		○			
	다. 건설기계 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	기안○					
	38.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						
	가. 면허부여 및 면허증 발급	기안		○			
나. 면허증 재발급	기안		○				

실·과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 청 장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급	팀 장 급				
<b>교 통 민원과</b>	다. 면허대장(카드) 관리 라. 면허증 반납 폐기처분 마. 면허증 정지, 취소 바. 적성검사 처리 사. 변경사항 신고 처리 39.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서 발급 40.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 대여사업의 신고 나. 건설기계 대여사업의 변경신고 41. 건설기계관리법 제위반에 관한 행정처분(과태료) 및 고발	기안○					
		기안○					
		기안		○			
		기안○					
		기안○					
		기안		○			
		기안		○			
		기안		○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59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동

나.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회사무국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라. 「민법」 제32조 및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 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검토를 시행한 사업
3.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4.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 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5.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비지급)**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서식>

## 기술(일반)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명 :

◦ 용역기간 : 200 . . . ~ 200 . . . ( 개월) (단위 : 원)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료비				
	소 계				
	노무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lt;참고 - 예시1&gt;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명 :

◦ 용역기간 : 200 . . . ~ 200 . . . (      개월)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연 구 활 동 비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반관리비 (      )%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      윤 (      )%				
⑦ 이윤 합산원가(⑤+⑥)				
⑧ 부가가치세				
용역비 총계				

&lt;참고 - 예시2&gt;

##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해당사항만 기재)

### 1. 인건비

#### 가. 총 액

구 분	계	기준단가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연 근무수당	야 간 근무수당	휴 일 근무수당	상 여 금	퇴 직 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계					
연구원						
	계					
연구보조원						
	계					
보조원						
	계					
합 계						

※ 담당과업은 연구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할 것

##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액

## (1) 연장근무수당

구 분	연장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원수		시간수		소요금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 (2) 야간근무수당

구 분	야간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 원 수		시 간 수		소요금액	
			1 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 (3) 휴일근무수당

구 분	휴일근무사유	근무일수	인 원 수		소 요 금 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 (4) 상여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기본금월액	지 급 율 (연간)	소요금액	
				1인당(월)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5) 퇴직충당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소 요 금 액	
				1 인 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2. 여비

가. 국내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명	박	일
연구원			명	박	일
연구보조원			명	박	일
계					

(2) 소요금액

구 분	1인당				누계
	계	숙박비 (박수×단가)	일비 (일수×단가)	식비 (일수×단가)	
책임연구원		( )	( )	( )	( )
연구원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계					

나. 국외여비

(1) 출장내역

- ① 출장목적 :
- ② 출장인원 : 명(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③ 출장지역 :
- ④ 출장기간 : ~ ( 박 일)

## ⑤ 주요일정

일 자	활 동 사 항	비 고

## 2) 소요금액

구 분	인원수	1 인 당						누계
		계	항공료 (실비계산)	일 비 (일수×단가)	숙박비 (박수×단가)	식 비 (일수×단가)	준비금 (기준액)	
책임연구원				( )	( )	( )	( )	
연 구 원				(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계								

## 3. 유인물비

건 명	인쇄방법 및 내용		규 격	부수	면수	단 가	소요금액
	용지종류	색도, 특수사양 등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계							

※ 옵셋인쇄인 경우 별첨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첨부

## 4. 전산처리비

사용품목	규 격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 토너 가격 산출시 프린터 및 복사기의 제품명과 기종을 기재할 것

## 5.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품 명	용 도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 6. 회의비

가. 회의개최내역

구 분 (회의명칭)	개최목적	개최회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계						

나. 소요금액

구 분	1회당					누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 타	
		( )	( )	( )		
		( )	( )	( )		
계						

## 7. 임차료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회수	소요비용	
			1회당	누계
계				

## 8. 교통통신비

##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회수		소요금액	
		1인당	누계	1회당	누계
계					

## 나. 우편료

우편종류	발송목적	발송건수	소요금액	
			건당	누계
계				

## 다. 전신전화비

구분	사유	소요금액	산출근거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 9. 감가상각비

가. 산정금액 :

나. 산출근거 :



(별지 제4호서식)

##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span style="float: right;">대표자 :</span>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구매내역 :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가격조사 근거서류 포함)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입물품원가계산서(엑셀양식),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참고서식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별지 제5호서식)

##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p>◦ 수리목적 :</p>          			
<p>◦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포함) 1부.</li> <li>2. 산출기초조사서(엑셀양식) 1부.</li> <li>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li> <li>4. 1~3항의 전산파일</li> <li>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li> </ul> </li> </ol>			



(별지 제6호서식)

##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3항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참고서식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쇄비			
제본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 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별지 제7호서식)

##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전화번호 :				
<p>◦ 기획편집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격 :</li> <li>2. 색도 :</li> <li>3. 면수 : 표지 면, 내지 면</li> <li>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li> </ol>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출기초조사서 1부.</li> <li>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li> <li>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li> <li>4. 1~3항의 전산화일</li> <li>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li> </ol>					

< 참고서식 >

##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 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필 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 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